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16 - 25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안전·품질표시 대상공산품(가정용 섬유제품, 양탄자, 가죽제품)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9월 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양탄자)의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에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안전 기준의 합리적 운영 및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적 안전요건을 신설하고, 양탄자 품목에 대한 시험방법을 명확화하여 안전기준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정용 섬유제품(부속서 1), 가죽제품(부속서 3)

- 리튬이차전지가 포함되는 섬유, 가죽제품의 전기적 안전요건 추가
 - 관련 제품의 국내 제품사고조사연구 보고서 및 해외 사고사례 등을 고려하여 리튬이차전지가 포함되는 섬유, 가죽제품의 전기적 안전요건 및 주의경고사항 신설

양탄자(부속서 2)

- 관련 표준 신설 및 폐지 표준 삭제

3. 신·구조문 대비표, 안전기준 개정(안) : 붙임

4.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16. 11. 8.(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연락처

-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 전화/팩스 : 043-870-5459/043-870-5677

[붙임1] 안전품질표시 안전기준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가정용 섬유제품 (Textile Products)</p>	<p>가정용 섬유제품 (Textile Products)</p>	
<p>1. 적용범위 이 기준은 3용어의 정의"에 규정되어 있는 아동용 섬유제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기타 제품류, 한복, 학생복의 안전요건,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맞춤형은 안전·품질표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p>	<p>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만 13세 이하의 유아용 및 아동용 섬유제품을 제외한 섬유제품의 안전요구사항,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맞춤형은 안전·품질표시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p>	<p>아동용 섬유제품 제외 등 적용범위 수정</p>
<p>2. 관련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p>	<p>2. 인용표준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써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p>	<p>용어 수정</p>
<p>KS K 0021 섬유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확인 표시 방법</p>	<p>KS K 0021 섬유제품의 취급에 관한 표시 기호 및 그 확인 표시 방법</p>	
<p>KS K 0050 성인남성복의 치수</p>	<p>KS K 0050 성인남성복의 치수</p>	
<p>KS K 0051 성인여성복의 치수</p>	<p>KS K 0051 성인여성복의 치수</p>	
<p>KS K 0052 유아복의 치수</p>	<p>KS K 0052 유아복의 치수</p>	
<p>KS K 0055 노년 여성의 여성복 치수</p>	<p>KS K 0055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p>	<p>표준명 수정</p>
<p>KS K 0056 팬티스타킹의 치수</p>	<p>KS K 0056 팬티스타킹의 치수</p>	
<p>KS K 0059 모자의 치수</p>	<p>KS K 0059 모자의 치수</p>	
<p>KS K 0088 양말의 치수</p>	<p>KS K 0088 양말의 치수</p>	
<p>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p>	<p>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p>	
<p>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p>	<p>KS K 0210 섬유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p>	
<p>KS K ISO 3071 텍스타일-수성 추출액의 pH 측정</p>	<p>KS K ISO 3071 텍스타일-수성 추출액의 pH 측정</p>	
<p>KS K ISO 14184-1 텍스타일 -포름알데히드 측정 - 제1부 : 유리 및 가수분해 포름알데히드(증류수 추출법)</p>	<p>KS K ISO 14184-1 텍스타일 -포름알데히드 측정 - 제1부 : 유리 및 가수분해 포름알데히드(증류수 추출법)</p>	
<p>KS K 0255 섬유물의 pH 측정 방법</p>	<p><삭제></p>	<p>폐지 표준 삭제</p>
<p>KS K 0734 폴리에스테르 섬유 제품 중의 아릴아민 함유량 측정방법</p>	<p><삭제></p>	<p>폐지 표준 삭제</p>
<p>KS K 0736 섬유제품의 알러지성 염료 함유량 시험방법 <신설> <신설></p>	<p>KS K 0736 섬유제품의 알러지성 염료 함유량 시험방법 KS K 0737 섬유제품의 유기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방법</p>	<p>관련 표준 추가</p>
	<p>KS K 0739 섬유제품 - 아조 염료로부터 생성되는 특정 방향족 아민의 분석 방법 - 제3부 : 특정 아조 염료를 사용할 때 생성되는 4-아미노아조벤젠 분석</p>	<p>관련 표준 추가</p>
<p>KS K 2620 충전재용 우모</p>	<p>KS K 2620 충전재용 우모</p>	
<p>KS K 9400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p>	<p>KS K 9400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p>	
<p>KS K 9401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p>	<p>KS K 9401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p>	
<p>KS K 9402 남자 아동복의 치수</p>	<p>KS K 9402 남자 아동복의 치수</p>	
<p>KS K 9403 여자 아동복의 치수</p>	<p>KS K 9403 여자 아동복의 치수</p>	
<p>KS K 9404 파운데이션의 치수</p>	<p>KS K 9404 파운데이션의 치수</p>	
<p>KS M 6681 신발의 치수체계</p>	<p>KS M 6681 신발의 치수체계</p>	
<p>KS M ISO 9407 신발의 치수-치수분류와 표식의 몬드 포인트 시스템</p>	<p>KS M ISO 9407 신발의 치수-치수분류와 표식의 몬드 포인트 시스템</p>	
<p>KS C IEC 전기전자제품-6가지 규제물질(납, 수은, 카드</p>	<p>KS C IEC 62321 전기전자제품-6가지 규제물질(납, 수</p>	<p>표준번호 누락</p>

현행	개정 (안)	비고
<p>뮴, 6가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p> <p>KS Q 1003 랜덤 샘플링 방법</p> <p>EN 14362-1 Textiles.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certain aromatic amines derived from azo colorants. Detection of the use of certain azo colorants accessible without extraction</p> <p>EN 14362-2 Textiles. Methods for the determination of certain aromatic amines derived from azo colorants. Detection of the use of certain azo colorants accessible by extracting the fibres</p> <p>EN 14682 Safety of children's clothing-Cords and drawstrings on children's clothing-Specifications</p> <p>ISO 3071 Textiles — Determination of pH of aqueous extract</p> <p>ISO 14184-1 Textiles — Determination of formaldehyde — Part 1: Free and hydrolized formaldehyde (water extraction method)</p> <p>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 유아용 섬유제품</p> <p><신설></p> <p><신설></p> <p>소방방재청고시 방염성능의 기준</p>	<p>은, 카드뮴, 6가크로뮴, PBBs, PBDEs)의 함량 측정</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삭제></p> <p>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유아용 섬유제품</p> <p>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 어린이용 가죽제품</p> <p>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p> <p>국민안전처고시 방염성능의 기준</p>	<p>표준 삭제</p> <p>중복 표준 삭제</p> <p>폐지 표준 삭제</p> <p>유통관련 표준 삭제</p> <p>중복 표준 삭제</p> <p>중복 표준 삭제</p> <p>안전관리수준 명칭 및 부속서 번호 수정</p> <p>관련 표준 추가</p> <p>관련 표준 추가</p> <p>소관부처 변경</p>
<p>3. 용어의 정의</p> <p>3.1 표시사항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3.1.1 초성섬유"라 함은 섬유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의 명칭을 말한다.</p> <p>3.1.2 혼용률"이라 함은 조성섬유가 2 종 이상의 섬유로 혼용 (혼방, 교직)되었을 때, 각 조성섬유의 무게를 전 조성섬유 무게에 대한 백분율 (%)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p> <p>3.1.3 취급상 주의사항"이라 함은 세탁 등의 취급 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섬유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p> <p>3.2 안전요건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3.2.1 방염제품"이라 함은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하며 방염제품이라 표시하였을 경우는 소방방재청고시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3.2.2 아동용 섬유제품"이라 함은 36개월 초과 만 12세 이하의 아동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내의류(3.2.3의 아동제품), 중의류(3.2.4의 아동제품), 외의류(3.2.5의 아동제품), 침구류(3.2.6의 아동제품), 가방(책가방 포함) 등을 말한다.</p> <p>3.2.3 '대의류'라 함은 지속적으로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가터벨트류, 코르셋류 (거들), 파니에, 브리프류,</p>	<p>3. 용어의 정의</p> <p>3.1 제품의 표시사항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3.1.1 초성섬유"라 함은 섬유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의 명칭을 말한다.</p> <p>3.1.2 혼용률"이라 함은 조성섬유가 2 종 이상의 섬유로 혼용 (혼방, 교직)되었을 때, 각 조성섬유의 무게를 전 조성섬유 무게에 대한 백분율 (%)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p> <p>3.1.3 취급상 주의사항"이라 함은 세탁 등의 취급 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섬유 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p> <p>3.2 안전요건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항목 이동> 3.2.3</p> <p><삭제></p> <p>3.2.1 피부 직접 접촉제품"이라 함은 피부에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제품을 의미하며, 슈미즈, 드로어즈, 브래지어류, 팬티류, 슬립류, 가터벨트류, 코르</p>	<p>문구 수정</p> <p>소관부처 변경 및 3.2.3항으로 이동</p> <p>어린이제품법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이관</p> <p>종류구분 변경 (피부직접접촉, 피부간접접촉)</p>

현행	개정 (안)	비고																																					
<p>런닝류, 임부속옷류, 잠옷류, 양말류(타이즈, 스타킹 포함), 복대 등을 말한다.</p> <p>3.2.4 중의류"라 함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방한대,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가발 등을 말한다.(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형태의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한다)</p> <p>3.2.5 외의류"라 함은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제품으로서,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를 말하며, 섬유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천연 가죽·인조가죽 또는 모피로 된 신발은 제외) 등을 말한다.(재킷, 코트 형태의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한다).</p> <p>3.2.6 침구류"라 함은 잠을 자는 데 이용하는 제품으로서, 이불 및 요, 베개, 모포, 침낭, 커버, 시트, 해먹, 카페트(면적이 1㎡ 미만) 등을 말한다.</p> <p>3.2.7 기타 제품류"라 함은 아동용 및 성인용 섬유제품 중 직접 착용하지 않는 가방(아동용가방 제외),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덮개, 커튼, 수의 등을 말하며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 대상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p> <p><기존 항목 이동> 3.2.1→3.2.3</p>	<p>셋류 (거들), 파니에, 브리프류, 런닝류, 임부속옷류, 잠옷류, 양말류(타이즈, 스타킹 포함), 복대, 레깅스류, 목욕가운, 가슴패드, 속치마, 블라우스, 원피스, 바지, 치마, 셔츠, 타올류, 장갑, 수영복, 체조복, 체육복, 방한대, 수면안대, 스포츠용 보호대, 헤어밴드, 가발, 귀마개 등을 말한다.(블라우스, 바지, 치마, 셔츠 형태의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한다)</p> <p>3.2.2 피부 간접 접촉제품"이라 함은 피부에 간접 접촉하는 제품을 의미하며, 슈트, 스웨터, 재킷, 코트, 다운의류, 커버올스, 점퍼, 모자, 숄, 머플러, 넥타이, 베스트, 조끼, 스카프, 앞치마, 토시, 우의, 신발(운동화, 장화류, 슬리퍼 등을 말하며, 섬유의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한 제품은 포함되나, 가죽이나 모피 소재 신발은 가죽제품에서 관리하므로 제외), 가방, 쿠션류, 방석류, 모기장, 덮개, 커튼, 벨트류(벨트 포함), 지갑, 이불 및 요, 베개, 모포, 침낭, 커버, 시트, 매트, 해먹, 카페트(면적이 1㎡ 미만) 등을 말한다.(재킷, 코트 형태의 학생복 및 한복을 포함한다)</p> <p>3.2.3 방염제품"이라 함은 방염처리하거나 난연성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말하며 방염제품이라 표시하였을 경우는 국민안전처 고시 방염성능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기타제품류 삭제 및 기타제품 품목 이동</p>																																					
<p>4. 안전요건</p> <p>4.1 유해물질 안전요건 각 구분별 섬유제품은 표 1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한다.</p>	<p>4. 안전요건</p> <p>4.1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의 기준 함유량은 5.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1]의 기준치에 적합하여야 하며, 가죽이나 모피 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3(가죽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신발류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범위는 갑피, 안감, 깔창에 한한다.</p>	<p>문구 수정 및 가죽이나 모피가 사용된 부분 및 신발의 적용범위 내용 추가</p>																																					
<p>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p>	<p>[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p>																																						
<table border="1"> <thead> <tr> <th>제품명</th> <th>아동용 섬유제품</th> <th>내의류</th> <th>중의류</th> <th>외의류 및 침구류</th> </tr> </thead> <tbody> <tr> <td>폼알데하이드 (mg/kg)</td> <td>75 이하</td> <td>75 이하</td> <td>75 이하</td> <td>300 이하</td> </tr> <tr> <td>아릴아민 (mg/kg)¹⁾</td> <td colspan="4">30 이하</td> </tr> <tr> <td>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 유량(%)²⁾</td> <td>0.1 이하</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제품명	아동용 섬유제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및 침구류	폼알데하이드 (mg/kg)	75 이하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아릴아민 (mg/kg) ¹⁾	3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 유량(%) ²⁾	0.1 이하	-	-	-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유해물질명</th> <th colspan="2">제품구분</th> </tr> <tr> <th>피부직접 접촉제품</th> <th>피부간접 접촉제품</th> </tr> </thead> <tbody> <tr> <td>폼알데하이드¹⁾ (mg/kg)</td> <td>75 이하</td> <td>300 이하</td> </tr> <tr> <td>아릴아민²⁾ (mg/kg)</td> <td colspan="2">각각 30 이하</td> </tr> <tr> <td>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³⁾</td> <td colspan="2">0.1 이하</td> </tr> <tr> <td>유기주석화합물</td> <td colspan="2">1.0 이하</td> </tr> </tbody> </table>	유해물질명	제품구분		피부직접 접촉제품	피부간접 접촉제품	폼알데하이드 ¹⁾ (mg/kg)	75 이하	300 이하	아릴아민 ²⁾ (mg/kg)	각각 3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 ³⁾	0.1 이하		유기주석화합물	1.0 이하		<p>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법으로 이관됨에 따른 삭제</p> <p>종류구분 변경 적용 플랫폼이체계 가소제 신규적용</p>
제품명	아동용 섬유제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및 침구류																																			
폼알데하이드 (mg/kg)	75 이하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아릴아민 (mg/kg) ¹⁾	3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 유량(%) ²⁾	0.1 이하	-	-	-																																			
유해물질명	제품구분																																						
	피부직접 접촉제품	피부간접 접촉제품																																					
폼알데하이드 ¹⁾ (mg/kg)	75 이하	300 이하																																					
아릴아민 ²⁾ (mg/kg)	각각 3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총 함유량 (%) ³⁾	0.1 이하																																						
유기주석화합물	1.0 이하																																						

현행		개정 (안)			비고
유기주석화합물 (mg/kg) ³⁾ - TBT (tributyltin)	1.0이하	(mg/kg) ⁴⁾ TBT (tributyltin)			알러지성 염료 기준치 설정
다이메틸푸마 레이트 (mg/kg) ⁴⁾	0.1이하	방염제 ⁵⁾	사용하지 말것		
방염제 ⁵⁾	사용하지 말것				
납(mg/kg) ⁶⁾	90이하	-	-	-	
코드 및 조 임꾼 ⁷⁾	적합	-	-	-	
알러지성 염료 ⁸⁾	사용하지 말것	사용하지 말것	-	-	
pH ⁹⁾	4.0 ~ 7.5	4.0 ~ 7.5	4.0 ~ 9.0	4.0 ~ 9.0	
니켈 (Ni)의 용출량 ¹⁰⁾	0.5µg/cm ² /week이하				
		니켈 (Ni)의 용출량 ⁷⁾ (µg/cm ² /week)	0.5 이하		
<p>주</p> <p><u><신 설></u></p> <p>1. 염색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4에 따른다.</p> <p>2. 코팅제, 고무, 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사용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표 2와 같다.</p> <p>3.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나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 되지 않는다)</p> <p>4. 피혁 및 모피 등 가죽 소재가 되어 있는 부분만 적용한다.</p> <p>5. 대상물질은 TDBPP [tri(2,3-dibromopropyl) phosphate], PentaBDE [Pentabromodiphenyl ethers], OctaBDE [Octabromodiphenyl ethers]이고 방염가공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p> <p>6. 코팅, 프린팅, 단추 등 부자재를 사용된 부분만 적용한다. 단 금속류의 경우는 기준치를 300 mg/kg 이하로 한다.</p> <p>7. 코드 및 조임꾼이 있는 제품은 KS K 0941 또는 EN 14682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품의 연령 구분 및 정의는 KS K 0941에 따르되 아동용 제품의 대상 연령은 12세 이하로 한다.</p> <p>8. 대상물질은 KS K 0736에 따르고 알러지 염료로 가공 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p> <p>9. 아동용, 내의류, 중의류의 경우 10년 12월 31일까지는 4.0 ~ 8.0를 적용한다.</p> <p>10. 아동용 섬유제품을 제외한 제품은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제품이나 전자파차단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p> <p>11.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부위 중 충전재 및 제품 면적 대비 5 % 이하인 부분은 제외하며, 면적계산이 불가한</p>		<p>주</p> <p>1. 섬유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p> <p>2. 염색한 <u>섬유부분에만</u>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9에 따른다.</p> <p>3. 피부에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합성수지제 제품에 적용하며(욕실화, 슬리퍼, 샌들 등), 대상물질은 표 2와 같다.</p> <p>4. 섬유 원단에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p> <p><u><삭 제></u></p> <p>5. 대상물질은 TDBPP [tri(2,3-dibromopropyl) phosphate], PentaBDE [Pentabromodiphenyl ethers], OctaBDE [Octabromodiphenyl ethers]이고 방염가공처리된 제품에 한하여 적용한다.</p> <p><u><삭 제></u></p> <p><u><삭 제></u></p> <p>6. 대상물질은 KS K 0736에 따르며 <u>조성섬유가 폴리에스터, 나일론, 아크릴, 아세테이트 섬유로 구성된 섬유부분에 한하여</u> 적용한다.</p> <p><u><삭 제></u></p> <p>7.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u>상시접촉하는 금속에</u> 한하여 적용한다. <u>표면이 도금형태가 아닌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제외한다.</u></p> <p>8. 제품을 구성하는 섬유 부위 중 충전재 및 제품 면적 대비 5 % 이하인 부분은 제외하며, 면적계산이 불가한</p>			

현행	개정 (안)	비고																								
<p>대비 5 % 이하인 부분은 제외하며, 면적계산이 불가한 끈이나 코드 등 섬유제 부속의 경우 전체 중량의 1 %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p> <p>12.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 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 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종류</p> <table border="1" data-bbox="86 607 691 792"> <thead> <tr> <th></th> <th>물 질 명</th> <th>CAS No.</th> </tr> </thead> <tbody> <tr> <td>1</td> <td>Di-(2-ethylhexyl)phthalate(DEHP)</td> <td>117-81-7</td> </tr> <tr> <td>2</td> <td>Butylbenzyl phthalate(BBP)</td> <td>85-68-7</td> </tr> <tr> <td>3</td> <td>Dibutyl phthalate(DBP)</td> <td>84-74-2</td> </tr> </tbody> </table>		물 질 명	CAS No.	1	Di-(2-ethylhexyl)phthalate(DEHP)	117-81-7	2	Butylbenzyl phthalate(BBP)	85-68-7	3	Dibutyl phthalate(DBP)	84-74-2	<p>끈이나 코드 등 섬유제 부속의 경우 전체 중량의 1 %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단, <u>상기 조건에도 불구하고 제품 착용시 신체와 지속적으로 직접 접촉하는 부위는 적용대상으로 인정한다.</u></p> <p>9. 제품에 투입된 원부자재가 추가적인 가공 없이 최종 제품에 사용되었다면 그 원부자재의 안전요건을 최종제품의 안전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 2]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종류</p> <table border="1" data-bbox="711 562 1315 748"> <thead> <tr> <th></th> <th>물 질 명</th> <th>CAS No.</th> </tr> </thead> <tbody> <tr> <td>1</td> <td>Di-(2-ethylhexyl)phthalate(DEHP)</td> <td>117-81-7</td> </tr> <tr> <td>2</td> <td>Butylbenzyl phthalate(BBP)</td> <td>85-68-7</td> </tr> <tr> <td>3</td> <td>Dibutyl phthalate(DBP)</td> <td>84-74-2</td> </tr> </tbody> </table>		물 질 명	CAS No.	1	Di-(2-ethylhexyl)phthalate(DEHP)	117-81-7	2	Butylbenzyl phthalate(BBP)	85-68-7	3	Dibutyl phthalate(DBP)	84-74-2	<p>적용범위 명확화</p> <p>항목 번호 수정</p>
	물 질 명	CAS No.																								
1	Di-(2-ethylhexyl)phthalate(DEHP)	117-81-7																								
2	Butylbenzyl phthalate(BBP)	85-68-7																								
3	Dibutyl phthalate(DBP)	84-74-2																								
	물 질 명	CAS No.																								
1	Di-(2-ethylhexyl)phthalate(DEHP)	117-81-7																								
2	Butylbenzyl phthalate(BBP)	85-68-7																								
3	Dibutyl phthalate(DBP)	84-74-2																								
<p>4.2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p> <p>안전·품질표시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한 공산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당 <u>가죽제품을</u>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또는 제3자 시험·검사기관, 외국의 시험성적서,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안전·품질표시기준에 <u>따랐는지를</u> 확인하여야 한다.</p>	<p>4.2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p> <p>안전·품질표시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한 공산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당 <u>제품을</u>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또는 제3자 시험·검사기관, 외국의 시험성적서,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안전·품질표시기준에 <u>적합한지를</u> 확인하여야 한다.</p>	<p>오타 수정</p> <p>자구 수정</p>																								
<p><신 설></p>	<p>4.3 전기적 안전요건</p> <p><u>4.3.1 섬유(가죽)제품에 포함되는 2차전지는 폭발 등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리튬폴리머 전지로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사용되는 리튬폴리머 전지 및 셀의 안전성(플라스틱 보강 및 케이스가 있는 상태)을 KC62133 또는 그에 준하는 성적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u></p> <p><u>4.3.2 외부의 충격, 하중, 휨 변형, 관통 등에 의한 파손을 고려하여 전지가 위치한 공간은 내충격 방지용 독립 공간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예 : 제품 도면 등).</u></p> <p><u>4.3.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침수 등에 의한 전지 폭발 및 사고에 대비하여 해당 제품이 IP(International Protection) 보호 등급 IPX7등급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u></p> <p><u>4.3.4 전지를 제외한 모든 전기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인증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u></p> <p><u>4.3.5 전기 제품 및 리튬폴리머 전지가 내장되거나 사용되는 모든 제품은 사용상 발생 가능한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반드시 주의경고 표시 8종류 이상을 기호 및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표시 예 1] 리튬이차전지 사용 제품의 주의경고</p>	<p>전기적 안전요건</p> <p>추가</p>																								

현행	개정 (안)	비고
<p>5. 시험 방법</p> <p>5.1 pH KS K ISO 3071 또는 ISO 3071 에 따른다.</p> <p>5.2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KS K ISO 14184-1 또는 ISO 14184-1에 따른다.</p> <p>5.3 아릴아민 함유량 KS K 0147, KS K 0734, EN 14362-1, EN 14362-2에 따른다.</p> <p>5.4 프탈레이트가소제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5(어린이용 장신구의 프탈레이트가소제 시험방법)에 따른다.</p> <p>5.5 유기주석화합물 함유량 KS K 0737에 따른다.</p> <p>5.6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유량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유아용 섬유제품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유량 시험)에 따른다.</p> <p>5.7 방염제</p> <p>5.7.1 PBB, PentaBDE, OctaBDE의 시험은 KS C IEC 62321에 따른다.</p> <p>5.7.2 TDBPP(TRIS) 자율안전확인부속서 4A(유아용 섬유제품의 방염제 시험방법)에 따른다.</p> <p>5.8 납 자율안전확인부속서 35(어린이용 장신구의 납 시험방법)에 따른다.</p>	<p style="text-align: center;">예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인증을 받지 않은 전지 또는 충전기를 사용하여 충전하는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습니다.</p> <p>2. 전지 단자에 금속성 물질(휴대폰 액세서리, 동전 등)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세요.</p> <p>3. 전지를 어린 아이가 빨거나 동물이 물어뜯지 않도록 하세요.</p> <p>4. 전지를 파손시키거나 강한 충격, 가열, 침수, 날카로운 물질로 뚫을 경우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금하여 주세요.</p> <p>5. 전지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을 직사광선이 드는 자동차 내부 등 밀폐된 고온의 장소에 두지 마세요. 변형, 고장,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p> <p>6. 임의로 분해하거나 충격을 주지 말고, 충전 중인 상태로 이용하지 마세요. 감전, 누전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p> <p>7. 전지의 발열, 누액, 파열, 오염 등은 기기고장의 원인이 되거나 상해의 위험이 있으니 전지를 임의로 분해 및 개조하지 마세요.</p> <p>8.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의(예:신발, 의류 등) 해당 부위를 구부리거나, 세탁, 외부적으로 강한 충격을 가할 경우 전지의 파손,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p> <p>9. 전지가 내장되어 있는 제품을 유아동이 사용하는 경우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p> </div> <p>5. 시험 방법</p> <p>5.1 pH KS K ISO 3071에 따른다.</p> <p>5.2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KS K ISO 14184-1에 따른다.</p> <p>5.3 아릴아민 함유량 KS K 0147, KS K 0739에 따른다.</p> <p>5.4 프탈레이트가소제 총 함유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에 따른다.</p> <p>5.5 유기주석화합물 함유량 KS K 0737에 따른다.</p> <p><삭제></p> <p>5.6 방염제</p> <p>5.6.1 PentaBDE, OctaBDE의 시험은 KS C IEC 62321에 따른다.</p> <p>5.6.2 TDBPP(TRIS)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양탄자) 부속서 A TDBPP 정량방법에 따른다.</p> <p><삭제></p> <p><삭제></p>	<p>중복 표준 삭제</p> <p>중복 표준 삭제</p> <p>중복 표준 삭제 및 신설 표준 추가</p> <p>항목 번호 수정</p> <p>다이메틸푸마레이트 가죽제품 안전요건 따르도록 변경</p> <p>항목 번호 수정</p> <p>항목 번호 수정</p> <p>납 삭제</p> <p>코드 및 조임끈 삭제</p> <p>항목 번호 수정</p>

현행	개정 (안)	비고						
<p>5.9 코드 및 조임끈 KS K 0941, EN 14682에 따른다.</p> <p>5.10 알러지성 염료 KS K 0736에 따른다.</p> <p>5.11 니켈의 용출량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5.B(어린이용 장신구-니켈 용출량)에 따른다.</p> <p>6.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p> <p>6.1 개별 제품</p> <p>6.1.1 개별제품에는 세탁을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별표 1에 따라 섬유 조성 또는 혼용률,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자명(국산품에 한함)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및 제조국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자' 표시는 제품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품 문의처', 소비자상담실' 제조자명(국산품에 한함), 수입자명' 또는 판매자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p> <p><기존 항목 이동> 별표1~별표3</p> <p>6.1.2 개별제품에는 제품의 추적이 가능한 제조연월, 최초 판매시점, 로트번호, 제품의 스타일번호, 바코드 번호, QR코드 등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여 동제품이 언제 만들어 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피부 접촉이 일시적인 타올 및 직접 착용하지 않은 가방, 방석류, 모기장, 덮개, 수의 등은 자체적으로</p>	<p>5.7 알러지성 염료 KS K 0736에 따른다.</p> <p>5.8 니켈의 용출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에 따른다.</p> <p>6.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p> <p>6.1 개별 제품</p> <p>개별제품에는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더라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표 3에 따라 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자' 표시는 제품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품 문의처', 소비자상담실' 제조자명(국산품에 한함),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또는 판매자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 3 개별제품별 표시사항</p> <table border="1" data-bbox="708 994 1305 1727"> <thead> <tr> <th>섬유제품 구분</th> <th>품질표시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의류</td> <td>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함)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5. 치수(권장)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td> </tr> <tr> <td>의류 이외의 섬유제품</td> <td>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 병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5. 치수(권장)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td> </tr> </tbody> </table> <p><7. 세부 표시방법으로 이동></p>	섬유제품 구분	품질표시사항	의류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함)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5. 치수(권장)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의류 이외의 섬유제품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 병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5. 치수(권장)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p>항목 번호 수정 및 표준명 변경</p> <p>항목 번호 삭제 및 드라이클리닝 등 내용 추가</p> <p>[별표 1] 이동 표 내용 수정</p> <p>제조연월만 표시 허용토록 변경</p> <p>7.세부 표시방법으로 이동</p>
섬유제품 구분	품질표시사항							
의류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에 한함)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5. 치수(권장)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의류 이외의 섬유제품	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 겉감 - 안감 - 충전재를 사용한 제품은 충전재 병기. 2.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3. 제조국명 4. 제조연월 5. 치수(권장) 6. 취급상 주의사항 7.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현행	개정(안)	비고						
<p>추적할 수 있는 번호를 관리하고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을 권장한다.)</p> <p>6.2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p> <p>6.2.1 개별제품의 박음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류, 런닝셔츠, 팬티류, 양말류, 장갑류, 수영복, 체조복, 스키프, 머플러, 손수건, 가발류, 모자, 기저귀류, 신발, 수의류, 타올, 넥타이, 모기장, 덮개류, 턱받이류는 6.1.1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제품의 포장, 꼬리표 또는 스티커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까지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침낭 및 카페트는 방염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개별제품의 표시한 경우도 소비자가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 확인할 수 없는 개별제품의 표시도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p> <p>6.2.2 동일품명으로 2 개 이상(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 포장 단위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p> <p>7. 세부표시 방법</p> <p>7.1 섬유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p> <p>7.1.1 섬유제품별로 표기하여야 할 조성섬유는 [별표 2]에 따른다.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는 KS K 0210에 따라 조성 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수치를 병기한다. 다만, 섬유의 조성이 단일 섬유인 경우는 100%로 표시한다.</p> <p><기존 항목 이동> 별표2→표4</p>	<p>6.2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p> <p>6.2.1 개별제품의 박음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류, 런닝셔츠, 팬티류, 양말류, 장갑류, 수영복, 체조복, 스키프, 머플러, 손수건, 가발류, 모자류, 기저귀류, 신발류, 수의류, 타올류, 넥타이, 모기장, 덮개류, 턱받이류, 가방류, 지갑류, 벨트류, 방한대, 양면제품 등은 6.1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별제품의 포장, 꼬리표 또는 스티커 등으로 소비자에게 판매 또는 전달될 때까지 표시할 수 있다. 다만, 6.1항에 따라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개별제품에 표시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포장을 개봉하지 않는 한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를 추가로 하여야 한다.</p> <p>6.2.2 동일품명으로 2 개 이상(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 포장 단위 표면에 표시할 수 있다.</p> <p>7. 세부 표시방법</p> <p>7.1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p> <p>7.1.1 섬유제품별로 표기하여야 할 조성섬유는 [표 4]에 따른다.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는 KS K 0210에 따라 조성 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에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수치를 병기하며 혼용률의 표시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섬유의 조성이 단일 섬유인 경우는 100%로 표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 4] 조성섬유</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직물에 있어서는 이를 조직하고 있는 실 (변사를 제외한다)을 조성하는 섬유 다만, 파일 직물에 있어서는 파일을 조성하는 섬유</p> <p>2. 편성물에 있어서는 이를 편성하고 있는 실을 조성하는 섬유</p> <p>3. 부직포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p> <p>4. 레이스 원단에 있어서는 이를 구성하고 있는 실을 조성하는 섬유</p> <p>5. [표 3]의 섬유제품은 그 원단을 구성하는 섬유 및 총전재 섬유</p> </div> <p style="text-align: center;">[표시 예 2] 혼용률 표현 예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올바른 표현</th> <th>올바른 표현</th> <th>잘못된 표현</th> </tr> </thead> <tbody> <tr> <td>면 100 %</td> <td>면 95 % 폴리우레탄 5 %</td> <td>면 95.5 % 폴리우레탄 45 %</td> </tr> </tbody> </table> <p>7.1.2 조성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실로 된 원단, 그 원단 또는 조성이 다른 2 종류 이상의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에 대하여는 다른 실 또는 원단의 매사용 부분을 분리하여 그 사용부분을 알기 쉽</p>	올바른 표현	올바른 표현	잘못된 표현	면 100 %	면 95 % 폴리우레탄 5 %	면 95.5 % 폴리우레탄 45 %	<p>품목 추가 및 항목 번호 수정</p> <p>내용 추가</p> <p>[별표 2] 이동</p> <p>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 예 추가</p> <p>일부 기축이 사용된 경우 표시방법 추가</p>
올바른 표현	올바른 표현	잘못된 표현						
면 100 %	면 95 % 폴리우레탄 5 %	면 95.5 % 폴리우레탄 45 %						

현행	개정 (안)	비고
<p><신설></p> <p>(3) 별표 4에 적합한 섬유제품(그 조성섬유 중 섬유의 종류가 2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별표 3과 같이 표시하거나 또는 조성섬유 중 혼용률이 큰 것부터 적어도 2 이상의 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를 순차로 열기하고, 나머지의 섬유를 기타로 일괄하여 표시하는 방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유제품 2. 냅사, 슬립사 등 섬유조성이 불균일한 실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3. 기모된 직물 및 편성물과 이를 사용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4. 조성섬유의 일부가 마인 섬유제품 (마 이외의 조성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모·견·비스코스섬유 또는 아세테이트섬유인 것에 한한다) 5. 지조직에 무늬가 있는 원단이 무늬부분 또는 연속무늬가 있는 원단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의 무늬부분 6. 오팔가공한 직물이나 편성물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p> </div> <p style="text-align: center;">[표시 예 6] 표기 예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혼용률이 면 60 %, 나일론 30 %, 레이온 10 %인 경우</p> <p>면 나일론 레이온</p> </div> <p>(3) [표 8]에 적합한 섬유제품(그 조성섬유 중 섬유의 종류가 2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표 7]과 같이 표시하거나 또는 조성섬유 중 혼용률이 큰 것부터 적어도 2 이상의 섬유의 명칭을 표시하는 문자를 순차로 열기하고, 나머지의 섬유를 기타 또는 기타섬유로 일괄하여 표시하는 방법</p> <p>[표 8] 혼용률이 큰 것부터 2 이상의 섬유명칭의 문자를 순차로 열기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표시하는 방법</p>	<p>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 예 추가</p> <p>적용범위 명확화</p> <p>[별표 4] 이동</p>
<p><기존 항목 이동> 별표4 별표 8</p> <p><신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말 2. 장갑 3. 케미칼레이스 원단 및 겹감에 케미칼레이스 원단만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4. 레이스원단 (지조직을 갖는 것에 한함) 및 겹감에 레이스원단만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등의 지조직 이외의 부분 5. 수공레이스 섬유제품 6. 레이스원단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등 (3. 및 4.에 적합한 것을 제외한다)의 레이스원단을 사용한 부분 7. 수영복, 체조옷 8. 브래지어, 코르셋, 기타의 파운데이션 9. 이불 및 요의 솜, 침낭의 충전재 (다운제품 제외) 10. 이불 및 요의 겹감과 안감의 조성섬유가 다를 때의 이불 및 요의 겹감 </div> <p style="text-align: center;">[표시 예 7] 표기 예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혼용률이 양모 50 %, 캐시미어 45 %, 폴리에스터 5 %인 경우</p> <p>양모 캐시미어 기타(또는 기타섬유)</p> </div>	<p>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 예 추가</p>

현행	개정(안)	비고																																																								
<p>(4) 안감을 사용하는 섬유제품에 대하여는 그 안감을 분리하여 섬유조성 또는 혼용률을 표기한다.</p> <p>(5) 이불 및 요의 솜, 침낭의 충전재로 방적공정의 폐설물, 천조각 또는 실부스러기 등을 섬유상태의 것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채용면 사용”으로 표시하는 방법</p> <p>(6) 혼용률 산정이 불가능한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7.1.3(2) 또는 7.1.3.(3) 항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방법으로 표기가 불가능할 경우는 조성섬유 명칭 다음에 혼용률 불명”이라 표시한다.</p> <p>(7) 운동화의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는 걸감(또는 걸피), 안감, 창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창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p> <p>7.1.4 통일문자</p> <p>(1) 표시에 사용하는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에는 [별표 5]에 따라 통일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류가 불명한 섬유에 대하여는 불명섬유”라는 문자를 통일문자로 하여 사용하고 조성섬유 중 혼용률이 5% 미만인 섬유에 대하여는 기타 섬유” 또는 기타”라는 문자를 통일문자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기존 항목 이동> 별표5→표9</p>	<p>(4) 안감을 사용하는 섬유제품에 대하여는 그 안감을 분리하여 섬유조성 또는 혼용률을 표기한다.</p> <p>(5) 이불 및 요의 솜, 침낭의 충전재로 방적공정의 폐설물, 천조각 또는 실부스러기 등을 섬유상태의 것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채용면 사용”으로 표시하는 방법</p> <p>(6) 혼용률 산정이 불가능한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7.1.4(2) 또는 7.1.4.(3) 항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방법으로 표기가 불가능할 경우는 조성섬유 명칭 다음에 혼용률 불명”이라 표시한다.</p> <p>(7) 신발의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 표시는 걸감(또는 걸피), 안감, 창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창의 표시는 생략할 수 있다.</p> <p>7.1.5 통일문자</p> <p>(1) 표시에 사용하는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에는 [표 9]에 따라 통일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종류가 불명한 섬유에 대하여는 불명섬유”라는 문자를 통일문자로 하여 표기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 9] 섬유명칭의 통일문자</p> <table border="1" data-bbox="708 1120 1321 2148"> <thead> <tr> <th>섬유</th> <th>통일문자</th> </tr> </thead> <tbody> <tr> <td>면</td> <td>면</td> </tr> <tr> <td rowspan="6">모</td> <td>양모</td> <td>모 또는 양모</td> </tr> <tr> <td>모헤어</td> <td>모 또는 모헤어</td> </tr> <tr> <td>알파카</td> <td>모 또는 알파카</td> </tr> <tr> <td>앙고라</td> <td>모 또는 앙고라</td> </tr> <tr> <td>캐시미어</td> <td>모 또는 캐시미어</td> </tr> <tr> <td>낙타</td> <td>모 또는 낙타</td> </tr> <tr> <td>기타의 것</td> <td>모</td> </tr> <tr> <td>견</td> <td>견</td> </tr> <tr> <td>아_____마</td> <td>마 또는 아마</td> </tr> <tr> <td>저_____마</td> <td>마 또는 저마</td> </tr> <tr> <td>대_____마</td> <td>마 또는 대마</td> </tr> <tr> <td>황_____마</td> <td>마 또는 황마</td> </tr> <tr> <td rowspan="2">비스코스레이온</td> <td>평균 중합도가 450이상인 것</td> <td>레이온 또는 폴리노직</td> </tr> <tr> <td>그 밖의 것</td> <td>레이온 또는 비스코스</td> </tr> <tr> <td>모_____달</td> <td>고강력 인장강도와 높은 습윤탄성률을 나타내는 셀룰로오스 섬유⁽¹⁾</td> <td>레이온 또는 모달</td> </tr> <tr> <td>리오셀</td> <td>유기용매 방사공정으로 제조된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td> <td>레이온 또는 리오셀</td> </tr> <tr> <td rowspan="2">큐프라(동암모늄레이온섬유)</td> <td>큐프라 암모늄 공정으로 제조된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td> <td>레이온 또는 큐프라</td> </tr> <tr> <td>그 밖의 것</td> <td>아세테이트</td> </tr> <tr> <td rowspan="2">아세테이트섬유</td> <td>초화도가 92 % 이상인 것</td> <td>아세테이트 또는 트리아세테이트</td> </tr> <tr> <td>그 밖의 것</td> <td>아세테이트</td> </tr> <tr> <td>프로믹스섬유</td> <td></td> <td>프로믹스</td> </tr> <tr> <td>아라미드</td> <td>85 % 이상의 아미드 결합이 직접적으로 두 개의 방향족 환에 결합되어 제조된 합성섬유</td> <td>아라미드</td> </tr> </tbody> </table>	섬유	통일문자	면	면	모	양모	모 또는 양모	모헤어	모 또는 모헤어	알파카	모 또는 알파카	앙고라	모 또는 앙고라	캐시미어	모 또는 캐시미어	낙타	모 또는 낙타	기타의 것	모	견	견	아_____마	마 또는 아마	저_____마	마 또는 저마	대_____마	마 또는 대마	황_____마	마 또는 황마	비스코스레이온	평균 중합도가 450이상인 것	레이온 또는 폴리노직	그 밖의 것	레이온 또는 비스코스	모_____달	고강력 인장강도와 높은 습윤탄성률을 나타내는 셀룰로오스 섬유 ⁽¹⁾	레이온 또는 모달	리오셀	유기용매 방사공정으로 제조된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레이온 또는 리오셀	큐프라(동암모늄레이온섬유)	큐프라 암모늄 공정으로 제조된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레이온 또는 큐프라	그 밖의 것	아세테이트	아세테이트섬유	초화도가 92 % 이상인 것	아세테이트 또는 트리아세테이트	그 밖의 것	아세테이트	프로믹스섬유		프로믹스	아라미드	85 % 이상의 아미드 결합이 직접적으로 두 개의 방향족 환에 결합되어 제조된 합성섬유	아라미드	<p>포괄적 명칭 사용</p> <p>[별표 5] 이동</p> <p>양모, 마, 비스코스레이온 표현 추가</p>
섬유	통일문자																																																									
면	면																																																									
모	양모	모 또는 양모																																																								
	모헤어	모 또는 모헤어																																																								
	알파카	모 또는 알파카																																																								
	앙고라	모 또는 앙고라																																																								
	캐시미어	모 또는 캐시미어																																																								
	낙타	모 또는 낙타																																																								
기타의 것	모																																																									
견	견																																																									
아_____마	마 또는 아마																																																									
저_____마	마 또는 저마																																																									
대_____마	마 또는 대마																																																									
황_____마	마 또는 황마																																																									
비스코스레이온	평균 중합도가 450이상인 것	레이온 또는 폴리노직																																																								
	그 밖의 것	레이온 또는 비스코스																																																								
모_____달	고강력 인장강도와 높은 습윤탄성률을 나타내는 셀룰로오스 섬유 ⁽¹⁾	레이온 또는 모달																																																								
리오셀	유기용매 방사공정으로 제조된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레이온 또는 리오셀																																																								
큐프라(동암모늄레이온섬유)	큐프라 암모늄 공정으로 제조된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	레이온 또는 큐프라																																																								
	그 밖의 것	아세테이트																																																								
아세테이트섬유	초화도가 92 % 이상인 것	아세테이트 또는 트리아세테이트																																																								
	그 밖의 것	아세테이트																																																								
프로믹스섬유		프로믹스																																																								
아라미드	85 % 이상의 아미드 결합이 직접적으로 두 개의 방향족 환에 결합되어 제조된 합성섬유	아라미드																																																								


현행	개정(안)	비고																																								
	<table border="1" data-bbox="708 132 1321 943"> <tr> <td data-bbox="708 132 1134 264"> <p>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 폴리비닐알콜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리덴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계 합성섬유 폴리에스터계 합성섬유</p> </td> <td data-bbox="1134 132 1321 264"> <p>나일론 비닐론 비닐리덴 폴리염화비닐 폴리에스터</p> </td> </tr> <tr> <td data-bbox="708 264 823 405"> <p>폴리아크릴로니트릴계 합성섬유</p> </td> <td data-bbox="823 264 1321 405"> <p>아크릴로니트릴의 중량비율로 85% 이상을 함유하는 장쇄상 합성고분자를 섬유의 구성물질로 하는 인조섬유 그 밖의 것</p> </td> </tr> <tr> <td data-bbox="708 405 823 434"> <p>폴리에틸렌계 합성섬유</p> </td> <td data-bbox="823 405 1321 434"> <p>아크릴계</p> </td> </tr> <tr> <td data-bbox="708 434 823 463"> <p>폴리에틸렌계 합성섬유</p> </td> <td data-bbox="823 434 1321 463"> <p>폴리에틸렌</p> </td> </tr> <tr> <td data-bbox="708 463 823 492"> <p>폴리프로필렌계 합성섬유</p> </td> <td data-bbox="823 463 1321 492"> <p>폴리프로필렌</p> </td> </tr> <tr> <td data-bbox="708 492 823 521"> <p>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p> </td> <td data-bbox="823 492 1321 521"> <p>폴리우레탄</p> </td> </tr> <tr> <td data-bbox="708 521 823 551"> <p>폴리크랄계 합성섬유</p> </td> <td data-bbox="823 521 1321 551"> <p>폴리크랄</p> </td> </tr> <tr> <td data-bbox="708 551 823 580"> <p>유리섬유</p> </td> <td data-bbox="823 551 1321 580"> <p>유리섬유</p> </td> </tr> <tr> <td data-bbox="708 580 823 609"> <p>탄소섬유</p> </td> <td data-bbox="823 580 1321 609"> <p>탄소섬유</p> </td> </tr> <tr> <td data-bbox="708 609 823 638"> <p>금속섬유</p> </td> <td data-bbox="823 609 1321 638"> <p>금속섬유</p> </td> </tr> <tr> <td data-bbox="708 638 823 786"> <p>폴리에틸렌계 및 폴리프로필렌계로 혼합방사된 합성섬유</p> </td> <td data-bbox="823 638 1321 786"> <p>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이상 함유된 것. 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미만 함유된 것.</p> </td> </tr> <tr> <td data-bbox="708 786 823 943"> <p>전 각항의 섬유 이외의 섬유</p> </td> <td data-bbox="823 786 1321 943"> <p>폴리올레핀 80% 이상 함유된 쪽 섬유명칭을 사용 그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에 "지정외섬유" 또는 "지정외"라는 문자를 괄호를 붙여 부기한다.</p> </td> </tr> </table> <p data-bbox="708 976 1321 1043">주⁽¹⁾ : 컨디션을 거친 인장강도 B_c와 습윤상태에서 5% 신장시의 인장강도 B_w는 다음과 같다.</p> $B_c \geq 1.3\sqrt{LD} + 2LD$ $B_w \geq 0.5\sqrt{LD}$ <p data-bbox="708 1137 1321 1205">여기에서 LD (Linear Density)는 데시텍스로 나타내는 평균 선형 밀도 (단위길이당 중량)이다.</p> <p data-bbox="708 1256 1321 1585">(2) 조성섬유 중 혼용률이 5% 이하인 섬유에 대하여는 "기타 섬유" 또는 "기타"라는 문자를 통일문자로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혼용률이 5% 이하인 섬유가 2종류 이상 포함되어 있고, 그 총량이 15%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 섬유" 또는 "기타"라는 통일문자를 사용하고, 각 섬유의 혼용률을 합계한 수치를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5% 이하인 섬유의 명칭을 각각 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p> <p data-bbox="890 1603 1142 1637">[표시 예 8] 표기 예시</p> <table border="1" data-bbox="708 1653 1321 1883"> <tr> <td colspan="4" data-bbox="708 1653 1321 1709">혼용률이 면 48% 모 45% 레이온 4% 폴리에스터 3%인 경우</td> </tr> <tr> <td data-bbox="708 1709 1011 1765">면</td> <td data-bbox="1011 1709 1067 1765">48%</td> <td data-bbox="1067 1709 1321 1765">면</td> <td data-bbox="1321 1709 1377 1765">48%</td> </tr> <tr> <td data-bbox="708 1765 1011 1798">모</td> <td data-bbox="1011 1765 1067 1798">45%</td> <td data-bbox="1067 1765 1321 1798">모</td> <td data-bbox="1321 1765 1377 1798">45%</td> </tr> <tr> <td data-bbox="708 1798 1011 1854">기타</td> <td data-bbox="1011 1798 1067 1854">7%</td> <td data-bbox="1067 1798 1321 1854">레이온 } 폴리우레탄 }</td> <td data-bbox="1321 1798 1377 1854">7%</td> </tr> </table> <p data-bbox="708 1928 1321 2040">(3) 7.1.5. (1)의 통일문자에는 상표 또는 통일문자 이외의 섬유명을 병기할 수 있다. 다만, 상표 및 통일문자 이외의 섬유명은 통일문자 다음의 괄호 내에 기재한다.</p> <p data-bbox="708 2056 919 2089"><7.1.1항으로 이동></p>	<p>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 폴리비닐알콜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리덴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계 합성섬유 폴리에스터계 합성섬유</p>	<p>나일론 비닐론 비닐리덴 폴리염화비닐 폴리에스터</p>	<p>폴리아크릴로니트릴계 합성섬유</p>	<p>아크릴로니트릴의 중량비율로 85% 이상을 함유하는 장쇄상 합성고분자를 섬유의 구성물질로 하는 인조섬유 그 밖의 것</p>	<p>폴리에틸렌계 합성섬유</p>	<p>아크릴계</p>	<p>폴리에틸렌계 합성섬유</p>	<p>폴리에틸렌</p>	<p>폴리프로필렌계 합성섬유</p>	<p>폴리프로필렌</p>	<p>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p>	<p>폴리우레탄</p>	<p>폴리크랄계 합성섬유</p>	<p>폴리크랄</p>	<p>유리섬유</p>	<p>유리섬유</p>	<p>탄소섬유</p>	<p>탄소섬유</p>	<p>금속섬유</p>	<p>금속섬유</p>	<p>폴리에틸렌계 및 폴리프로필렌계로 혼합방사된 합성섬유</p>	<p>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이상 함유된 것. 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미만 함유된 것.</p>	<p>전 각항의 섬유 이외의 섬유</p>	<p>폴리올레핀 80% 이상 함유된 쪽 섬유명칭을 사용 그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에 "지정외섬유" 또는 "지정외"라는 문자를 괄호를 붙여 부기한다.</p>	혼용률이 면 48% 모 45% 레이온 4% 폴리에스터 3%인 경우				면	48%	면	48%	모	45%	모	45%	기타	7%	레이온 } 폴리우레탄 }	7%	<p data-bbox="1326 1256 1509 1346">5% 미만인 섬유가 2종 이상인 경우 표시방법 추가</p> <p data-bbox="1326 1525 1509 1603">이해를 돕기 위해 표시 예 추가</p> <p data-bbox="1326 1973 1509 2007">7.1.1항으로 이동</p>
<p>폴리아미드계 합성섬유 폴리비닐알콜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리덴계 합성섬유 폴리염화비닐계 합성섬유 폴리에스터계 합성섬유</p>	<p>나일론 비닐론 비닐리덴 폴리염화비닐 폴리에스터</p>																																									
<p>폴리아크릴로니트릴계 합성섬유</p>	<p>아크릴로니트릴의 중량비율로 85% 이상을 함유하는 장쇄상 합성고분자를 섬유의 구성물질로 하는 인조섬유 그 밖의 것</p>																																									
<p>폴리에틸렌계 합성섬유</p>	<p>아크릴계</p>																																									
<p>폴리에틸렌계 합성섬유</p>	<p>폴리에틸렌</p>																																									
<p>폴리프로필렌계 합성섬유</p>	<p>폴리프로필렌</p>																																									
<p>폴리우레탄계 합성섬유</p>	<p>폴리우레탄</p>																																									
<p>폴리크랄계 합성섬유</p>	<p>폴리크랄</p>																																									
<p>유리섬유</p>	<p>유리섬유</p>																																									
<p>탄소섬유</p>	<p>탄소섬유</p>																																									
<p>금속섬유</p>	<p>금속섬유</p>																																									
<p>폴리에틸렌계 및 폴리프로필렌계로 혼합방사된 합성섬유</p>	<p>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이상 함유된 것. 어느 한쪽의 중량비율이 20% 미만 함유된 것.</p>																																									
<p>전 각항의 섬유 이외의 섬유</p>	<p>폴리올레핀 80% 이상 함유된 쪽 섬유명칭을 사용 그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에 "지정외섬유" 또는 "지정외"라는 문자를 괄호를 붙여 부기한다.</p>																																									
혼용률이 면 48% 모 45% 레이온 4% 폴리에스터 3%인 경우																																										
면	48%	면	48%																																							
모	45%	모	45%																																							
기타	7%	레이온 } 폴리우레탄 }	7%																																							

현행	개정(안)	비고
<p>7.1.5 혼용률에 관한 특례</p> <p>(1) 섬유제품 중 별표 6에 적힌 조성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산정한다.</p> <p>(2) 원단의 장식 또는 조직의 모양에 사용한 실 및 섬유제품의 장식보강 또는 가장자리 등 특정부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강재, 상표, 무늬, 레이스, 밴드 등에 사용된 실 또는 원단으로서 그 조성섬유의 전체에 대한 혼용률이 5 %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혼용률을 산정할 수 있다.</p> <p>(3) 일부의 조성섬유에 대하여 그 혼용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조성섬유의 혼용률에 대하여는 혼용률을 나타내는 수치에 같음하여 혼용률 불명”또는 불명”이라 표시하여야 한다.</p> <p><기존 항목 이동> 별표6→표10</p> <p>7.1.6 오차의 허용범위</p> <p>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표시하는 경우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별표 7, 다운제품의 충전재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는 KS K 2620의 5.1 조성 혼합률의 허용범위에 따른다.</p> <p><기존 항목 이동> 별표7→표11</p>	<p>7.1.6 혼용률에 관한 특례</p> <p>(1) 섬유제품 중 표 10에 적힌 조성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침지 제외” 등과 같이 조성섬유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였음을 부기하여야 한다.</p> <p>(2) 원단의 장식 또는 조직의 모양에 사용한 실 및 섬유제품의 장식보강 또는 가장자리 등 특정부분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보강재, 상표, 무늬, 레이스, 밴드 등에 사용된 실 또는 원단으로서 그 조성섬유의 전체에 대한 혼용률이 5 %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혼용률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표 제외” 등과 같이 조성섬유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였음을 부기하여야 한다.</p> <p>(3) 일부의 조성섬유에 대하여 그 혼용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조성섬유의 혼용률에 대하여는 혼용률을 나타내는 수치에 같음하여 혼용률 불명”또는 불명”이라 표시하여야 한다.</p> <p>표 10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혼용율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모포의 모우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이외의 조성섬유</p> <p>2. 이모편직물 또는 이모편직물을 원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섬유제품 등에 대하여는 이모의 조성섬유(겉”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p> <p>3. 금속사, 첩사, 기타의 섬유 이외의 것으로 가공된 실, 슬릿사, 셀로판사의 조성섬유(금속사, 첩사, 기타의 섬유 이외의 것으로 가공된 실, 슬릿사, 셀로판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p> <p>4. 넵 또는 슬럽의 부분과 넵 또는 슬럽 이외의 부분의 조성이 다른 넵사 및 슬럽사와 이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의 넵 또는 슬럽의 조성섬유(넵 또는 슬럽의 조성섬유의 종류 및 넵사나 슬럽사를 사용하고 있는 뜻을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p> <p>5. 겉감의 일부에 레이스원단 (지조직을 갖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 등의 레이스원단을 사용한 부분의 지조직 이외의 조성섬유(지조직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하는 경우에 한한다)</p> <p>6. 섬유제품의 심지·재봉사 등의 부속재료 또는 장식보강재 등으로 사용한 가죽, 인조가죽, 비닐 등의 비섬유재료</p> </div> <p>7.1.7 오차의 허용범위</p> <p>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표시하는 경우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표 11, 다운제품의 충전재 함량을 표시하는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는 7.1.3.2 표 6 조성혼합률 표시 기준 및 이에 따른 허용범위에 따른다.</p> <p>표 11 혼용률 오차 허용범위</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 섬유의 조성이 100 %인 뜻을 표시하는 경우</p> <p>(1) 모에 있어서는 - 3 %, 단, 방모방식 실 및 이를 사용</p> </div>	<p>[별표 6] 이동</p> <p>[별표 7] 이동</p>

현행	개정 (안)	비고
<p>7.1.7 용어사용의 제한</p> <p>(1) 7.1.1 또는 7.1.3 에 따라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7.1.1 또는 7.1.3의 규정에 의한 표시 이외의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특성의 섬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p> <p>(2) 7.1.7 (1)의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의 사용에 있어서 그 섬유의 조성이 100 % 인 때에 한하여 그 문자에 슨”등 섬유의 조성이 100 % 인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그 문자에 혼방, 교직, 교편 또는 혼용인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할 수 있고, 아울러 모든 조성섬유명을 병기하여 수요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p> <p>(3) 7.1.5 (1) 및 7.1.5 (2)에 따라 혼용률을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조성섬유에서 제외된 실 또는 원단이 사용되어 있다는 뜻을 당해 문자에 각각 부기하여야 한다.</p> <p>(4) 조성섬유 표시는 동일 크기의 문자로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p> <p>7.2 제조국명 제조국은 제조자가 속한 국가를 말하며, 여러 제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을 부여한 자가 속한 국가 명을 쓰고, 국내에서 제조된 경우에는 한국산 등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기한다.</p> <p><신 설></p> <p>7.3 취급상 주의사항</p> <p>7.3.1 취급상 주의사항은 [별표 8]에 따라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 등을 포함해</p>	<p>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섬유제품인 경우는 -5 %로 표시하고, 방모사 사용” 등과 같이 방모방식 실을 사용한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p> <p>(2) 모 이외의 섬유에 있어서는 -1 %</p> <p>(3) 위 (1), (2)항은 불순물이 혼입되는 경우 등과 같이 제조공정 상 불가피한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설정된 오차 허용범위이므로 의도적으로 사용한 섬유에 대해서는 허용범위 이내라도 혼용률을 표기하여야 하고 허용범위를 감안하여 혼용을 표시를 조정하지 말아야 한다.</p> <p>2. 혼용률을 나타내는 수치에 이상”이라 부기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0 %, 미만”이라 부기하는 경우에는 +0 %</p> <p>3. 혼용률을 나타내는 수치를 5의 정수배(100을 제외한다)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시값의 ± 5</p> <p>4. 섬유제품분야 품질표시기준 7.1.4 (2) 및 7.1.4 (3) 규정에 의하여 조성섬유의 혼용순서를 열기한 경우에 그 열기순서가 2 % 이내의 혼용률의 차이로 잘못된 것은 이를 실제의 혼용순서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p> <p>5. 그 이외의 경우에는 표시값의 ± 4</p> <p>7.1.8 용어사용의 제한</p> <p>(1) 7.1.1 ~ 7.1.4에 따라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7.1.1 ~ 7.1.4의 규정에 의한 표시 이외의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특성의 섬유를 나타내는 것으로 널리 수요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p> <p>(2) 7.1.8 (1)의 섬유의 명칭을 나타내는 문자의 사용에 있어서 그 섬유의 조성이 100 % 인 때에 한하여 그 문자에 슨”등 섬유의 조성이 100 % 인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할 수 있으며, 기타의 경우에는 그 문자에 혼방, 교직, 교편 또는 혼용인 뜻을 나타내는 문자를 부기할 수 있고, 아울러 모든 조성섬유명을 병기하여 수요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p> <p><삭 제></p> <p>(3) 조성섬유 표시는 동일 크기의 문자로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p> <p>7.2 제조국명 제조국은 제조자가 속한 국가를 말하며, 여러 제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을 부여한 자가 속한 국가 명을 쓰고, 국내에서 제조된 경우에는 한국산 등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기한다. 수입제품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기한다.</p> <p>7.3 제조연월</p> <p>섬유제품의 개별제품에는 제조연월을 표시하여야 한다.</p> <p>7.4 취급상 주의사항</p> <p>7.4.1 취급상 주의사항은 [표 12]에 따라 제품에 적합한 내용을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방법 등을 포함해 4종류 이상을 KS K 0021에 따라 한글 또는 기호로 표</p>	<p>항목번호 수정</p> <p>제조연월만 표시 허용토록 내용 변경</p> <p>항목 번호 수정 및 내용 수정</p>

현행	개정 (안)	비고											
<p>4 종류 이상을 한글 또는 기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기호는 KS K 0021 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류, 손수건, 타올, 모기장, 덮개류, 가방 등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p> <p>7.3.2 금속 악세사리를 사용한 제품에는 별표 8(7)에 따라 녹 및 피부 접촉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7.3.3 불꽃 주의 표시 불꽃 접근시 제품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별표 8(8)에 따라 불꽃주의”의 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p> <p>7.3.4. 유아 또는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섬유제품이 자율 안전확인 부속서36(완구)제2부.4.2시험(작은 부품시험)에서 통과되는 작은 부품이 부착된 경우에는 별표8(9)에 따라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7.3.5. 유아 및 아동이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은 별표8(10)에 따라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기존 항목 이동> 별표8→표12</p>	<p>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류, 손수건, 타올, 모기장, 덮개류, 가방 등은 취급상 주의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p> <p>7.4.2 금속 악세사리를 사용한 제품에는 표 13(1)에 따라 녹 및 피부 접촉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7.4.3 불꽃 주의 표시 불꽃 접근시 제품에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표 13(2)에 따라 불꽃주의”의 기호를 추가할 수 있다.</p> <p>7.4.4. 유아 또는 아동용 섬유제품에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제2부 5.2 작은 부품시험에서 통과되는 작은 부품이 부착된 경우에는 표 13(3)에 따라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7.4.5. 유아 및 아동이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은 표 13(4)에 따라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7.4.6 어린이의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 아동용 섬유제품 중 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 합이 0.1 %를 초과한 제품은 표 13(5)에 따라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p> <p>표 12 취급상 주의표시</p> <p>(1) 물세탁 방법</p> <table border="1" data-bbox="708 1077 1310 1868"> <thead> <tr> <th>취급상 주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물의 온도 95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삶을 수 있다.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td> </tr> <tr> <td>물의 온도 60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td> </tr> <tr> <td>물의 온도 40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td> </tr> <tr> <td>물의 온도 40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¹⁾도 할 수 있다.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td> </tr> <tr> <td>물의 온도 30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¹⁾도 할 수 있다. 세제 종류는 중성 세제를 사용한다.</td> </tr> <tr> <td>물의 온도 30 ℃를 표준으로 하여 약하게 손세탁⁽¹⁾할 수 있다 (세탁기 사용 불가).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td> </tr> <tr> <td>물세탁은 안 된다.</td> </tr> </tbody> </table> <p>주(1) : 약한 손세탁은 흔들어 빨기, 눌러 빨기 및 주물러 빨기가 있다.</p> <p>(2) 산소 또는 염소표백의 가부</p> <table border="1" data-bbox="708 2007 1310 2130"> <thead> <tr> <th>취급상 주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td> </tr> <tr> <td>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td> </tr> </tbody> </table>	취급상 주의사항	물의 온도 95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삶을 수 있다.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60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40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40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 ⁽¹⁾ 도 할 수 있다.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30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 ⁽¹⁾ 도 할 수 있다. 세제 종류는 중성 세제를 사용한다.	물의 온도 30 ℃를 표준으로 하여 약하게 손세탁 ⁽¹⁾ 할 수 있다 (세탁기 사용 불가).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물세탁은 안 된다.	취급상 주의사항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	
취급상 주의사항													
물의 온도 95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할 수 있다. 삶을 수 있다.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60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40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세탁할 수 있다 (손세탁 가능).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40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 ⁽¹⁾ 도 할 수 있다. 세제 종류에 제한 받지 않는다.													
물의 온도 30 ℃를 표준으로 하여 세탁기로 약하게 세탁 또는 약한 손세탁 ⁽¹⁾ 도 할 수 있다. 세제 종류는 중성 세제를 사용한다.													
물의 온도 30 ℃를 표준으로 하여 약하게 손세탁 ⁽¹⁾ 할 수 있다 (세탁기 사용 불가). 세제 종류는 중성세제를 사용한다.													
물세탁은 안 된다.													
취급상 주의사항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													
염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													

현행	개정 (안)	비고
	<p>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p> <p>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p> <p>염소,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있다.</p> <p>염소, 산소계 표백제로 표백할 수 없다.</p> <p>(3) 다림질 방법</p> <p>취급상 주의사항</p> <p>다리미의 온도 180~210 ℃ 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p> <p>다림질은 형겅을 덮고 온도 180~210 ℃ 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p> <p>다리미의 온도 140~160 ℃ 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p> <p>다림질은 형겅을 덮고 온도 140~160 ℃ 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p> <p>다리미의 온도 80~120 ℃ 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p> <p>다림질은 형겅을 덮고 온도 80~120 ℃ 로 다림질을 할 수 있다.</p> <p>다림질을 할 수 없다.</p> <p>비고 : 1. 다림질 방법 기호 중 온도기호 “℃”는 생략할 수 있다.</p> <p>(4) 드라이클리닝</p> <p>취급상 주의사항</p> <p>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p> <p>용제의 종류는 퍼클로로에틸렌 또는 석유계를 사용한다.</p> <p>드라이클리닝 할 수 있다.</p> <p>용제의 종류는 석유계에 한한다.</p> <p>드라이클리닝 할 수 없다.</p> <p>드라이클리닝은 할 수 있으나 셀프서비스는 할 수 없고, 전문점¹⁾에서만 할 수 있다.</p> <p>비고 : 1. 전문점이란 가죽, 모피 제품을 취급하는 업소를 말한다.</p> <p>(5) 짜는 방법</p> <p>취급상 주의사항</p> <p>손으로 짜는 경우에는 약하게 짜고, 원심 탈수기인 경우는 단시간에 짤다.</p> <p>짜면 안 된다.</p> <p>(6) 건조방법</p> <p>취급상 주의 사항</p> <p>햇빛에 옷걸이에 걸어서 건조시킬 것</p> <p>옷걸이에 걸어서 그늘에서 건조시킬 것</p> <p>햇빛에 뉘어서 건조시킬 것</p> <p>그늘에 뉘어서 건조시킬 것</p> <p>세탁 후 건조할 때 기계건조를 할 수 있음</p> <p>세탁 후 건조할 때 기계건조를 할 수 없음</p> <p>[표 13] 기타 취급상 주의·경고 문구</p> <p>(1) 녹 및 피부 접촉 주의사항</p> <p>취급상 주의사항</p> <p>물 세탁시 녹이 발생할 수 있음</p>	

현행	개정 (안)	비고																											
<p>7.4 섬유제품의 치수를 표시할 경우는 별표 9에 따른다.</p> <p><기존 항목 이동> 별표9→표14</p>	<p>체질에 따라 피부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음</p> <p>(2) 불꽃주의</p> <p>취급상 주의사항</p> <p>불꽃 접근시 불길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있음. 아래의 기호로 병행 표시할 수 있다.</p>  <p>(3) 유아 또는 아동용 섬유제품에 부착된 작은부품에 대한 주의사항</p> <p>취급상 주의사항</p> <p>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p> <p>(4) 유아 및 아동이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료의 신발에 대한 주의사항</p> <p>취급상 주의사항</p> <p>주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깔 수 있음</p> <p>(5) 어린이의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 아동용 섬유제품 중 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 합이 0.1 %를 초과한 제품에 대한 경고사항</p> <p>경고사항</p> <p>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p> <p>7.5 섬유제품의 치수를 표시할 경우는 표 14에 따라 표시하며 치수 표시는 신체치수를 표시한다. 표시는 제품 내의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단위는 국제 표준 단위(SI)로 표시하여야 한다.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하고, 솔, 가방, 커튼 등 일부제품은 생략이 가능하다.</p> <p>표 14 치수표시</p> <table border="1" data-bbox="708 1738 1305 2134"> <thead> <tr> <th>품명</th> <th>치수표시명세</th> <th>제품치수 허용범위</th> </tr> </thead> <tbody> <tr> <td>성인 남성복의 치수</td> <td>KS K 0050에 따름</td> <td>—</td> </tr> <tr> <td>성인 여성복의 치수</td> <td>KS K 0051에 따름</td> <td>—</td> </tr> <tr> <td>유아복의 치수</td> <td>KS K 0052에 따름</td> <td>—</td> </tr> <tr> <td>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td> <td>KS K 0055에 따름</td> <td>—</td> </tr> <tr> <td>팬티스타킹의 치수</td> <td>KS K 0056에 따름</td> <td>—</td> </tr> <tr> <td>모자의 치수</td> <td>KS K 0059에 따름</td> <td>—</td> </tr> <tr> <td>양말의 치수</td> <td>KS K 0088에 따름</td> <td>—</td> </tr> <tr> <td>남자 청소년복의 치수</td> <td>KS K 9400에 따름</td> <td>—</td> </tr> </tbody> </table>	품명	치수표시명세	제품치수 허용범위	성인 남성복의 치수	KS K 0050에 따름	—	성인 여성복의 치수	KS K 0051에 따름	—	유아복의 치수	KS K 0052에 따름	—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	KS K 0055에 따름	—	팬티스타킹의 치수	KS K 0056에 따름	—	모자의 치수	KS K 0059에 따름	—	양말의 치수	KS K 0088에 따름	—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	KS K 9400에 따름	—	<p>치수 내용 추가</p> <p>별표9 이동</p>
품명	치수표시명세	제품치수 허용범위																											
성인 남성복의 치수	KS K 0050에 따름	—																											
성인 여성복의 치수	KS K 0051에 따름	—																											
유아복의 치수	KS K 0052에 따름	—																											
노년 여성을 위한 여성복 치수	KS K 0055에 따름	—																											
팬티스타킹의 치수	KS K 0056에 따름	—																											
모자의 치수	KS K 0059에 따름	—																											
양말의 치수	KS K 0088에 따름	—																											
남자 청소년복의 치수	KS K 9400에 따름	—																											

현행	개정 (안)			비고																								
<p>7.5 안전요건 적합 표시 안전요건에 적합함을 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시사항에 기준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한 제품임"의 표시문구를 추가할 수 있다.</p> <p>[별표 1] 개별제품별 표시사항</p> <p>[별표 2] 조성섬유</p> <p>[별표 3] 혼용율이 큰 것부터 순차로 섬유명칭의 문자를 열거하여 표시하는 방법</p> <p>[별표 4] 혼용율이 큰 것부터 2 이상의 섬유명칭의 문자를 순차로 열거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표시하는 방법</p> <p>[별표 5] 섬유명칭의 통일문자</p> <p>[별표 6] 조성섬유로부터 제외하여 혼용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p> <p>[별표 7] 혼용률 오차 허용범위</p> <p>[별표 8] 취급상 주의표시</p> <p>(9) 유아 또는 아동이 입을 수 있는 섬유제품의 작은부분에 대한 주의사항</p> <p>(10) 유아 및 아동이 사용하는 연질 또는 발포된 합성수지 재질의 신발에 대한 주의사항</p> <p>[별표 9] 섬유제품에 있어서 치수표시</p>	<table border="1"> <tr> <td>여자 청소년복의 치수</td> <td>KS K 9401에 따름</td> <td>—</td> </tr> <tr> <td>남자 아동복의 치수</td> <td>KS K 9402에 따름</td> <td>—</td> </tr> <tr> <td>여자 아동복의 치수</td> <td>KS K 9403에 따름</td> <td>—</td> </tr> <tr> <td>파운데이션 의류 치수</td> <td>KS K 9404에 따름</td> <td>—</td> </tr> <tr> <td>기저귀의 치수</td> <td>KS K 0052에 따름</td> <td>—</td> </tr> <tr> <td>신발의 치수</td> <td>KS M 6681 또는 KS M ISO 9407에 따름</td> <td></td> </tr> <tr> <td>장갑의 치수 (mm)</td> <td>전체길이 및 나비</td> <td>전체길이 : 표시 길이 이상</td> </tr> <tr> <td>모포 이불 및 요 침낭 가페트, 커튼류</td> <td>제품치수 가로×세로</td> <td>—3 cm</td> </tr> </table>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	KS K 9401에 따름	—	남자 아동복의 치수	KS K 9402에 따름	—	여자 아동복의 치수	KS K 9403에 따름	—	파운데이션 의류 치수	KS K 9404에 따름	—	기저귀의 치수	KS K 0052에 따름	—	신발의 치수	KS M 6681 또는 KS M ISO 9407에 따름		장갑의 치수 (mm)	전체길이 및 나비	전체길이 : 표시 길이 이상	모포 이불 및 요 침낭 가페트, 커튼류	제품치수 가로×세로	—3 cm			<p>항목 번호 수정</p>
	여자 청소년복의 치수	KS K 9401에 따름	—																									
	남자 아동복의 치수	KS K 9402에 따름	—																									
	여자 아동복의 치수	KS K 9403에 따름	—																									
	파운데이션 의류 치수	KS K 9404에 따름	—																									
	기저귀의 치수	KS K 0052에 따름	—																									
	신발의 치수	KS M 6681 또는 KS M ISO 9407에 따름																										
	장갑의 치수 (mm)	전체길이 및 나비	전체길이 : 표시 길이 이상																									
	모포 이불 및 요 침낭 가페트, 커튼류	제품치수 가로×세로	—3 cm																									
	<p>비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치수표시는 cm단위를 사용하여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류의 치수는 신체치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치수측정은 정밀도를 가진 자로 명확히 재며 제품의 치수는 평평한 대위에 놓고 부자 연한 주름이나 장력이 없도록 한 후 잴다. 치수의 범위 표시가 가능한 제품 중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범위의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를 범위 표기법에 중복되지 않게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p>7.6 안전요건 적합 표시 안전요건에 적합함을 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시사항에 기준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한 제품임"의 표시문구를 추가할 수 있다.</p>																												
<p><항목 이동></p>																												
<p><항목 이동></p>																												
<p><항목 이동></p>																												
<p><항목 이동></p>																												
<p><항목 이동></p>																												
<p><항목 이동></p>																												
<p><항목 이동></p>																												
<p><항목 이동></p>																												
<p><항목 이동></p>																												
<p><항목 이동></p>																												
<p><항목 이동></p>																												
<p><항목 이동></p>																												
<p><항목 이동></p>																												

[붙임2] 안전품질표시 안전기준 부속서 3 (가죽제품)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가죽제품 (Leather products)</p> <p>1. 적용범위 이 기준은 3. 용어의 정의"에 따른 제품의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p> <p>2. 관련표준 다음의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p> <p>KS G 3116 구두 KS G 3405 구두용 구두골 KS K 0611 섬유제품의 폼알데하이드 측정방법 : 증류추출법 KS K 0733 섬유 및 가죽 제품의 PCP 함유량 측정방법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 KS K 0737 섬유 제품의 유기 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M 6681 신발의 치수체계 KS M ISO 9407 신발의 치수-치수분류와 표식의 문도포인트 시스템 KS M ISO 17186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피막 두께 측정 ISO 17131 Leather-identification of leather with microscopy <신 설></p> <p>KS M 6902 가죽의 크로뮴(VI) 함량 측정 KS M ISO 4044 가죽-화학시험 시료의 준비 KS K ISO 14184-1 텍스타일-폼알데하이드 측정-제1부:유리 및 가수분해 폼알데하이드(증류수추출법) KS M ISO 17075 가죽 - 화학적 시험 - 6가 크로뮴 함량의 측정방법 KS M ISO 17226 가죽 - 화학적 시험 - 폼알데하이드 함량 측정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 유아용 섬유제품-</p>	<p style="text-align: center;">가죽제품 (Leather products)</p> <p>1. 적용범위 이 기준은 3. 용어의 정의"에 따른 제품의 안전요건 및 표시사항, 표시방법에 대하여 규정하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다른 안전기준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p> <p>2. 인용표준 다음의 표준 또는 기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표준 또는 기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p> <p>KS G 3116 구두 KS G 3405 구두용 구두골 <삭 제> KS K 0733 섬유 및 가죽 제품의 PCP 함유량 측정방법 KS K 0147 염료 및 염색물의 아릴아민 시험방법 KS K 0737 섬유 제품의 유기 주석 화합물 함유량 시험 방법 KS M 6681 신발의 치수체계 KS M ISO 9407 신발의 치수-치수분류와 표식의 문도포인트 시스템 KS M ISO 17186 가죽-물리적, 기계적 시험-피막 두께 측정 ISO 17131 Leather-identification of leather with microscopy ISO/TS 16186 Footwear — Critical substances potentially present in footwear and footwear components — Test method to quantitatively determine dimethyl fumarate (DMFU) in footwear materials <삭 제> KS M ISO 4044 가죽-화학시험 시료의 준비 <삭 제> KS M ISO 17075 가죽 - 화학적 시험 - 6가 크로뮴 함량의 측정방법 KS M ISO 17226 가죽 - 화학적 시험 - 폼알데하이드 함량 측정 <삭 제></p>	<p>내용 수정</p> <p>폐지 표준 삭제</p> <p>DMFu 표준 추가</p> <p>폐지 표준 삭제</p> <p>표준 삭제</p> <p>표준 삭제</p>

<p>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p> <p>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5 어린이용 장신구</p> <p>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6 완구</p> <p>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p> <p>KS K ISO 6330 텍스타일-섬유 시험에 대한 가정세탁과 건조과정</p> <p>KS K ISO 3175-1 텍스타일-드라이클리닝 및 마무리-제1부:원단 및 의류의 클리닝성(cleanability) 평가방법</p> <p>KS K 0733 섬유 및 가죽제품의 PCP함유량 측정방법</p> <p>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u><신 설></u></p> <p>3.1 가죽 제품"이라 함은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혁), 천연모피제품(모피) 원단이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60 %이상인 제품을 말한다.</p> <p>3.2 천연가죽"이라 함은 동물의 껍질을 벗겨 부패를 막기 위한 무두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하이드(말, 소 등 큰 동물의 가죽) 또는 스킨(송아지, 돼지, 양, 뱀 등 작은 동물의 가죽)을 말한다. 무두질 전 또는 후에 표피층을 포함하는 상층부와 망상층의 하층부를 분리하여 만든 은면혁(銀面革, grain)과 상혁(床革, split)도 천연가죽에 포함된다.</p> <p>1. 무두질을 거친 하이드 또는 스킨이 지나는 원래의 섬유질 구조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해체하여 섬유상 입자, 작은 조각 또는 파우더 등으로 만든 후에 접착제 등으로 시트 형태로 만든 것은 천연가죽에 해당하지 않는다.</p> <p>2. 색상의 구현 또는 방수의 목적으로 수지를 가죽 표면에 도포, 라미네이팅을 했을 경우 그 두께가 0.15 mm 미만이어야 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3.3 인조가죽"이라 함은 천연가죽을 대체하기 위하여 화학적으로 합성하거나 천연가죽에 일정수준 이상의 물리적·화학적 처리를 한 것으로, 원료 및 처리공정에 따라 코팅가죽, 라미네이팅가죽, 재조합가죽, 합성가죽으로 분류한다.</p> <p>3.3.1 코팅가죽"이라 함은 가죽 표면에 각종 안료나</p>	<p>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p> <p>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u><삭 제></u></p> <p>3. 용어의 정의</p> <p>3.1 제품의 표시사항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3.1.1 채료의 종류"라 함은 가죽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의 명칭을 말한다.</p> <p>3.1.2 가죽 제품"이라 함은 천연가죽 및 인조가죽, 천연모피 원단의 비율이 제품 겉감의 면적대비 60 %이상인 제품을 말한다. 단, 신발의 경우는 겉피 면적대비 60 % 이상을 말한다.</p> <p>3.1.3 천연가죽"이라 함은 동물의 껍질을 벗겨 부패를 막기 위한 무두질 등의 가공공정을 거친 <u>고유의 섬유질 구조를 지닌 하이드(hide)(말, 소 등 몸집이 크고 가죽이 두꺼운 동물의 가죽) 또는 스킨(skin)(송아지, 돼지, 양, 뱀 등 몸집이 작은 동물의 가죽)</u>을 말한다. 천연가죽은 무두질 전 또는 후에 표피층을 포함하는 상층부와 망상층의 하층부를 분리하여 만든 은면가죽(銀面革, grain)과 은면가죽이 분할되고 떨어져 나온 하층부분인 분할가죽(床革, split)으로 분류하는데 모두 천연가죽에 포함된다.</p> <p>주 1. 무두질을 거친 하이드 또는 스킨이 지나는 원래의 섬유질 구조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해체하여 섬유상 입자, 작은 조각 또는 파우더 등으로 만든 후에 접착제 등으로 시트 형태로 만든 것은 천연가죽에 해당하지 않는다.</p> <p>2. 색상의 구현 또는 방수의 목적으로 가죽 표면에 수지를 코팅(도포), 라미네이팅을 했을 경우 그 두께가 0.15 mm 미만이어야 한다.</p> <p>3.1.3.1 "은면가죽"이라 함은 원피 중에 털이 붙어 있는 표피층을 포함하는 상층부 부분을 말한다.</p> <p>3.1.3.2 "분할가죽"이라 함은 가죽에서 은면을 분리한 표피층의 하부부분인 육면층(Flesh split)을 말하고, 필요에 따라 세 층으로 분리할 수도 있는데 가운데 층(속가죽, Middle split)도 분할가죽에 포함된다.</p> <p><u><삭 제></u></p> <p>3.1.4 코팅가죽"이라 함은 천연가죽 표면에 각종 안료</p>	<p>부속서 정보 수정</p> <p>표준 삭제</p> <p>표준 삭제</p> <p>표준 삭제</p> <p>표준 삭제</p> <p>위 내용과 중복 표준 삭제</p> <p>제품 표시사항에 사용하는 용어와 안전요건에 사용하는 용어 구분 정의 상세화</p> <p>내용 추가</p> <p>천연가죽 정의를 은면가죽과 분할가죽으로 세분화</p> <p>적용범위 상세화</p>
---	--	---

<p>바인더 및 합성수지를 분무(Spray), 덧칠(Padding), 롤 코팅(Roll coating) 등의 방법으로 코팅한 것으로, 코팅 두께는 0.15 mm 이상이고 전체가죽 두께의 1/3 미만이어야 한다.</p> <p>주) 코팅 두께의 측정은 KS M ISO 17186을 따른다.</p> <p>3.3.2 라미네이팅가죽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가죽 층 또는 한 개의 가죽 층에 한 개 이상의 특수합성필름 또는 다른 물질 층이 접착제로 부착 또는 접착된 것으로, 가죽 층 이외의 물질의 두께는 0.15 mm 이상이고 전체 두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p> <p>3.3.3 채조합가죽이라 함은 무두질한 가죽을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섬유나 작은 조각 또는 파우더의 형태로 해체시킨 후,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시트나 폼 형태로 만든 가죽을 의미한다. 본딩가죽, 그라인딩가죽, 분쇄가죽 등이 해당된다.</p> <p>3.3.4 합성가죽이라 함은 천연피혁 대체품으로 개발된 합성피혁 원단(파이룩신레더, 비닐레더, 스폰지레더, 나일론도장 합성레더, 폴리아미드계 합성레더, 우레탄계 합성레더, 아미노산계 합성피혁 등 합성가죽의 총칭)을 의미한다.</p> <p>3.4 천연모피라 함은 동물의 모피로 만든 원단(밍크, 여우, 토끼, 너구리, 친칠라 등의 모피를 포함한 동물 모피)을 의미한다.</p> <p><신 설></p> <p><신 설></p> <p>3.5 유아용 가죽제품이라 함은 36 개월 이하의 영·유아용 의류 및 가죽제품을 의미하며, 세부구분은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유아용 섬유제품 3. 세부분류)에 따른다.</p> <p>3.6 어린이용 가죽제품이라 함은 36 개월 초과 만 12 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가죽제품으로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가방(책가방 포함) 등을 말하며, 세부구분은 안전·품질표시 부속서1(가정용 섬유제품 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p> <p>3.7 유아용 가죽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을 제외한 가죽제품은 피부 접촉정도에 따라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및 "기타 제품류"로 구분하며, 세부구분은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단, 카페트에 한하여 면적이 1 m² 이상인 경우에도 가죽제품 품목에서 관리하도록 한다.</p> <p>4. 안전요건</p> <p>4.1 일반구조</p> <p>4.1.1 작은부품 유아용 가죽제품에 5.1.1.1에 따라 시험시 통과되는 부품이 부착된 경우, 5.1.1.2에 따른</p>	<p>나 바인더 및 합성수지를 분무(Spray), 덧칠(Padding), 롤 코팅(Roll coating) 등의 방법으로 코팅한 것으로, 코팅 두께는 0.15 mm 이상이고 전체가죽 두께의 1/3 미만이어야 한다.</p> <p>주 1. 코팅 두께의 측정은 KS M ISO 17186을 따른다.</p> <p>3.1.5 라미네이팅가죽이라 함은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천연가죽 층에 한 개 이상의 특수합성필름 또는 다른 물질 층이 접착제로 부착 또는 접착된 것으로, 가죽 층 이외의 물질의 두께는 0.15 mm 이상이고 전체 두께의 1/3 이상이어야 한다.</p> <p>3.1.6 채조합가죽이라 함은 무두질한 가죽을 물리적으로 또는 화학적으로 섬유나 작은 조각 또는 파우더의 형태로 해체시킨 후,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시트나 폼 형태로 만든 가죽을 의미한다. 본딩가죽, 그라인딩가죽, 분쇄가죽 등이 해당된다.</p> <p>3.1.7 합성가죽이라 함은 직물, 편물, 부직포 등의 기포에 수지를 함침 또는 코팅하여 표면에 형압축 등의 가공을 하여 만든 천연가죽의 대체품을 의미한다.</p> <p>3.1.8 천연모피라 함은 동물의 모피로 만든 원단(밍크, 여우, 토끼, 너구리, 친칠라 등의 모피를 포함한 동물 모피)을 의미한다.</p> <p>3.1.9 취급상 주의사항이라 함은 드라이클리닝, 손질방법, 보존방법 등의 취급 방법을 알리기 위하여 가죽제품에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p> <p>3.2 안전요건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삭 제></p> <p><삭 제></p> <p>3.2.1 가죽제품은 피부 접촉정도에 따라 피부 직접 접촉제품"과 피부 간접 접촉제품"으로 구분하며, 세부 품목은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단, 카페트에 한하여 면적이 1 m² 이상인 경우에도 가죽제품 품목에서 관리하도록 한다.</p> <p>4. 안전요건</p> <p><삭 제></p>	<p>합성수지 정의 추가</p> <p>취급상 주의사항 정의 추가</p> <p>어린이용 가죽제품으로 이관</p> <p>종류 구분 변경 사항 적용 (피부직접접촉, 피부간접접촉)</p> <p>어린이용 가죽제품으로 이관</p>
---	--	--

시험시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인장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KS K ISO 6330(A세탁법) 또는 KS K ISO 3175-1에 따라 시험할 경우 탈락되지 않아야 한다.

4.1.2 위해자석 (5.1.2 참조) 유아용 가축제품 및 어린이용 가축제품에는 어린이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해한 자석이나 자석부품이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어린이용 공산품에 포함된 자석은 어린이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 부록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전기 또는 전자부품의 기능 자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1.3 코드 및 조임끈 (5.1.3 참조) 유아용 가축제품 및 어린이용 가축제품에 KS K 0941 또는 EN 14682에서 규정하고 있는 코드 및 조임끈이 사용된 경우 KS K 0941 또는 EN 14682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유해물질 안전요건 가축제품의 유해성분의 기준 함유량은 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섬유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 대상연령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유아용 섬유제품)과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발류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범위는 어린이 및 성인용 제품일 경우 갑피, 안감, 깔창에 한한다(단, 유아용일 경우 제품전체를 적용범위에 포함함).

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

제품구분	유아용 가축제품	어린이용 가축제품	내의류	중의류	외의류, 잠구류 및 기타제품
유해물질명					
폼알데하이드 (mg/kg)	20 이하	75 이하	75 이하	75 이하	300 이하
염소화페놀류 (PCP) (mg/kg) ⁽¹⁾⁽²⁾	0.5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5.0 이하
6가 크로뮴 (mg/kg) ⁽²⁾	0.5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3.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mg/kg) ⁽²⁾	0.1 이하				
아릴아민 (mg/kg) ⁽²⁾	30 이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⁴⁾	DEHP, BBP	0.1 이하	0.1 이하	-	-
	DINP, DNOP		-	-	-
유기주석화합물 (mg/kg) ⁽²⁾	DBT (dibutyltin)	1.0 이하	-	-	-
	TBT (tributyltin)	0.5 이하	1.0 이하	1.0 이하	1.0 이하
납 (mg/kg) ⁽²⁾	90 이하	90 이하	-	-	-
카드뮴 (Cd) ⁽²⁾	75 이하	75 이하	-	-	-

4.1 유해물질 안전요건 유해물질의 기준 함유량은 5.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다음 [표 1]에 적합하여야 한다. 섬유소재가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 대상연령에 따라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단, 신발류의 유해물질 안전요건 적용범위는 갑피, 안감, 깔창에 한한다.

[표 1] 유해물질 안전요건

제품구분	유해물질명	피부직접 접촉제품	피부간접 접촉제품
	폼알데하이드 ¹⁾ (mg/kg)	75 이하	300 이하
	염소화페놀류 (PCP) ¹⁾²⁾ (mg/kg)	5.0 이하	5.0 이하
	6가 크로뮴 ¹⁾ (mg/kg)	3.0 이하	3.0 이하
	다이메틸푸마레이트 ¹⁾ (mg/kg)	0.1 이하	
	아릴아민 ¹⁾³⁾ (mg/kg)	각각 30 이하	
유기주석화합물 ⁴⁾ (mg/kg)	TBT (tributyltin)	1.0 이하	1.0 이하
	니켈용출량 ⁵⁾ (µg/cm ² /week)	0.5 이하	

어린이 관련내용 삭제

어린이 관련 안전요건 삭제

종류구분 변경 사항 적용

니켈 ($\mu\text{g}/\text{cm}^2/\text{week}$) ⁽⁶⁾	0.5 이하		
<p>주</p> <p><신 설></p> <p>1. PCP[pentachlorophenol]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p> <p>2. 무두질, 살균상충처리 등을 거치지 않는 합성가죽은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및 PCP검출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p> <p>3. 안료 또는 염료 등을 사용하여 색이 발현된 경우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4에 따른다.</p> <p>4. 코팅제, 고무, 플라스틱 등 소재를 사용한 경우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유아용 섬유제품의 자율안전확인기준, 아동용 가죽제품의 경우 가정용 섬유제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른다.</p> <p>5.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있는 경우만 적용한다(안료와 수지를 사용하지 않고 염료만 사용한 날염제품의 경우는 프린팅에 해당되지 않는다).</p> <p>6. 코팅, 프린팅, 단추 등 부자재를 사용한 부분만 적용한다. 단 금속류의 경우는 기준치를 300 mg/kg 이하로 한다.</p> <p>7. 페인팅, 코팅, 금속제품의 표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p> <p>8. 유아용 가죽제품 및 어린이용 가죽제품을 제외한 제품은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금속제품에 한한다.</p> <p><신 설></p> <p>4.3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p> <p>안전·품질표시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한 공산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당 가죽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또는 제3자 시험·검사기관, 외국의 시험성적서,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안전·품질표시기준에 따랐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5. 시험 방법</p> <p>5.1 일반구조</p> <p>5.1.1 작은부품</p> <p>5.1.1.1 작은부품 시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6(완구) 제2부 5.2를 따른다.</p> <p>5.1.1.2 작은부품 인장시험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p>	<p>주</p> <p>1. 가죽 또는 모피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p> <p>2. PCP[pentachlorophenol]뿐 아니라 나트륨염 등 모든 PCP화합물을 포함한 함유량을 말한다.</p> <p><삭 제></p> <p>3. 염색한 가죽부분에만 적용하며, 대상물질은 KS K 0147, KS K 0739에 따른다.</p> <p><삭 제></p> <p>4. 가죽 원단에 코팅, 프린팅 등이 되어 있는 경우만 적용한다.</p> <p><삭 제></p> <p><삭 제></p> <p>5. 원래 용도대로 제품을 착용한 상태에서 피부에 상시 접촉하는 금속에 한하여 적용한다. 표면이 도금형태가 아닌 페인트 코팅된 경우는 제외한다.</p> <p>4.2 전기적 안전요건</p> <p>가죽제품의 전기적 안전요건은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4.3 전기적 안전요건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p> <p>4.3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여부 확인</p> <p>안전·품질표시를 하려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안전한 공산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당 가죽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유해물질이 제품에 존재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체시험 또는 제3자 시험·검사기관, 외국의 시험성적서, 원자재 공급업체가 제시하는 시험성적서 등을 통하여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5. 시험 방법</p> <p><삭 제></p>	<p>적용범위 명확화</p> <p>적용범위 명확화</p> <p>적용범위 명확화</p> <p>적용범위 명확화</p> <p>적용범위 명확화</p> <p>전기적 안전요건 추가</p> <p>어린이제품 관련</p>	

<p>부속서 36(완구) 제2부 5.24.6.4를 따른다(이때 부착강도 기준치는 50 N ± 2 N).</p> <p>5.1.2 위해자석 어린이용 공산품에 대한 공통적용 유해물질의 안전기준 부록1에 따른다.</p> <p>5.1.3 코드 및 조임끈 KS K 0941 또는 EN 14682에 따른다.</p> <p>5.2 유해물질 안전요건</p> <p>5.2.1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KS K ISO 14184-1 또는 ISO 14184-1, KS M ISO 17226에 따른다.</p> <p>5.2.2 염소화페놀류 함유량 KS K 0733에 따른다.</p> <p>5.2.3 6가 크로뮴 함유량 KS M 6902, KS M ISO 17025에 따른다.</p> <p>5.2.4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유량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4.B(유아용 섬유제품-다이메틸푸마레이트 정량방법)에 따른다.</p> <p>5.2.5 아릴아민 함유량 KS K 0147에 따른다.</p> <p>5.2.6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5.C(어린이용 장신구-프탈레이트계 가소제)에 따른다.</p> <p>5.2.7 유기주석화합물 함유량 KS K 0737에 따른다.</p> <p>5.2.8 납 및 카드뮴 함유량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5.A(어린이용 장신구-납 및 카드뮴 함유량)에 따른다.</p> <p>5.2.9 니켈 용출량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35.B(어린이용 장신구-니켈 용출량)에 따른다.</p> <p>6.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p> <p>6.1 품명은 가죽제품이라 표시한다.</p> <p>6.2 개별제품에는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별표 1]의 사항을 부착하여야 한다.</p> <p>6.3 개별제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p>	<p>5.1 유해물질 안전요건</p> <p>5.1.1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u>KS M ISO 17226</u>에 따른다.</p> <p>5.1.2 염소화페놀류 함유량 KS K 0733에 따른다.</p> <p>5.1.3 6가 크로뮴 함유량 <u>KS M ISO 17075</u>에 따른다.</p> <p>5.1.4 다이메틸푸마레이트 함유량 <u>ISO/TS 16186</u>에 따른다.</p> <p>5.1.5 아릴아민 함유량 <u>KS K 0147, KS K 0739</u>에 따른다.</p> <p><삭제></p> <p>5.1.6 유기주석화합물 함유량 KS K 0737에 따른다.</p> <p><삭제></p> <p>5.1.7 니켈 용출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에 따른다.</p> <p>6.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p> <p><삭제></p> <p>6.1 개별제품</p> <p>개별제품에는 물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을 하더라도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박음질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의 방법으로 [표 2]에 따라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자' 표시는 제품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품 문의처', 소비자상담실' 제조자명 (국산품에 한함)',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 또는 판매자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치수는 표시할 것을 권장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 2] 개별제품 표시사항</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td>1. 품명</td></tr> <tr><td>2. 재료의 종류</td></tr> <tr><td>3. 제조자명</td></tr> <tr><td>4.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td></tr> <tr><td>5. 제조국명</td></tr> <tr><td>6. 제조연월</td></tr> <tr><td>7. 주소 및 전화번호</td></tr> <tr><td>8. 치수(권장)</td></tr> <tr><td>9. 취급상 주의사항</td></tr> </table> <p>6.2 개별제품의 포장 또는 꼬리표, 스티커 등의 표시</p>	1. 품명	2. 재료의 종류	3. 제조자명	4.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5. 제조국명	6. 제조연월	7. 주소 및 전화번호	8. 치수(권장)	9. 취급상 주의사항	<p>시험방법 삭제</p> <p>섬유 관련 표준 삭제</p> <p>표준 삭제 및 오타 수정</p> <p>농축액 정제과정이 포함되어 있어 현재 방법보다 정확한 결과도출 가능</p> <p>관련 표준 추가</p> <p>부속서 정보 수정</p> <p>개별제품 표시사항 내용 추가</p> <p>[별표 1] 이동</p>
1. 품명											
2. 재료의 종류											
3. 제조자명											
4. 수입자명 (수입품에 한함)											
5. 제조국명											
6. 제조연월											
7. 주소 및 전화번호											
8. 치수(권장)											
9. 취급상 주의사항											

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지갑류, 가방류, 벨트류, 신발류 등은 **중이상표**, 꼬리표,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 전달될 때까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품명으로 2개 이상 (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포장단위 표면에 품질 표시를 할 수도 있다.

6.4 가죽 및 모피 의류의 표시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의 표시는 섬유 부분에 한하며, 가죽 및 모피 원단의 표시와 사용상 주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가죽제품의 표시 규정에 따른다.

7. 세부표시사항

<신 설>

7.1 재료의 종류 (조성 표시)

7.1.1 재료의 종류는 겉감 및 안감(의류에 한함)에 대하여 모두 표시하고, 신발류는 갑피,창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7.1.2 천연가죽은 **천연가죽**’으로 표시하고 **표 2**와 같이 동물명을 부기한다.

표 2 천연가죽의 동물종을 표시하는 용어

	천연가죽의 동물종	표시명
천연가죽	소의 가죽	천연가죽(소가죽)
	양의 가죽	천연가죽(양가죽)
	염소의 가죽	천연가죽(염소가죽)(¹)
	사슴의 가죽	천연가죽(사슴가죽)
	돼지의 가죽	천연가죽(돼지가죽)
	말의 가죽	천연가죽(말가죽)
	개의 가죽	천연가죽(개가죽)
	뱀의 가죽	천연가죽(뱀)
	위의 각항에 규정된 이외의 동물종 가죽	동물종의 통칭을 나타내는 용어

주 1. 산양가죽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7.1.3 **3.3.1**와 **3.3.2**에 따라 코팅가죽, 라미네이팅가죽

개별제품 표시가 제품의 사용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을 심히 해할 수 있는 지갑류, 가방류, 벨트류, 신발류 등은 **6.1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이상표**, 꼬리표,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이 **판매 또는 전달될 때까지** 떨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동일 품명으로 2개 이상 (상·하의 경우는 제외)의 개수로 모아서 포장된 상태로 판매할 경우는 최소 판매포장단위 표면에 품질표시를 할 수도 있다.

6.3 가죽 및 모피 의류의 표시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의 표시는 섬유 부분에 한하며, 가죽 및 모피 원단의 표시와 사용상 주의사항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가죽제품의 표시 규정에 따른다.

7. 세부 표시방법

7.1 품명 : 가죽제품’으로 표시한다.

7.2 재료의 종류 (조성 표시)

7.2.1 재료의 종류는 겉감 및 안감(의류에 한함)에 대하여 모두 표시하고, 신발류는 갑피, 창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서로 다른 가죽을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섬유와 혼용된 가죽제품의 경우 사용부분을 분리하여 그 사용부분을 알기 쉽도록 표시하고 각 사용부분별 재료의 종류를 병기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가죽 및 모피의류의 안감 또는 제품의 일부가 섬유재질일 경우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라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률을 표시한다.

7.2.2 천연가죽은 **천연가죽(동물명)**’으로 표시한다. 동물명은 **[표 3]**과 같이 동물종의 통칭을 나타내는 용어를 부기한다. 이 때 **3.1.3.1**항 또는 **3.1.3.2**항에 따른 은면가죽과 분할가죽을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다.**[예. 천연가죽(소 은면가죽), 천연가죽(소 분할가죽)]**

[표 3] 천연가죽의 동물종을 표시하는 용어

	천연가죽의 동물종	표시명
천연가죽	소의 가죽	천연가죽(소)
	양의 가죽	천연가죽(양)
	염소의 가죽	천연가죽(염소)(¹)
	사슴의 가죽	천연가죽(사슴)
	돼지의 가죽	천연가죽(돼지)
	말의 가죽	천연가죽(말)
	개의 가죽	천연가죽(개)
	뱀의 가죽	천연가죽(뱀)
	위의 각항에 규정된 이외의 동물종 가죽	동물종의 통칭을 나타내는 용어

주 1. 산양가죽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

7.2.3 **3.1.4**에 따라 코팅가죽에 해당하는 경우 코팅가

항목 번호 및 내용 수정

품명 세부 표시 방법 추가
재료의 종류 표시 방법 상세화

은면가죽 또는 분할가죽 표시 방법 병기 가능 내용 추가

<p>에 해당하는 경우 '인조가죽'으로 표시하거나 각 항목에 맞게 표시하고, 코팅 또는 라미네이팅 재료의 성분을 병기할 수 있다(예 : 인조가죽(폴리우레탄 코팅), 인조가죽(폴리우레탄 라미네이팅) 또는 코팅가죽(폴리우레탄 코팅), 라미네이팅가죽(폴리우레탄 라미네이팅) 등). 3.3.3에 따라 재조합가죽에 해당할 경우 '인조가죽'으로 표시하거나 '재조합가죽'으로 표시하고, 재조합 방식을 부기하거나(예 : 인조가죽(본딩가죽), 인조가죽(그라인딩가죽), 인조가죽(분쇄가죽) 또는 재조합가죽(본딩가죽), 재조합가죽(그라인딩가죽), 재조합가죽(분쇄가죽) 등), 가죽성분과 가죽 이외 성분의 혼용율을 조성이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예 : 인조가죽(가죽 60%, 기타 40%) 또는 재조합가죽(가죽 60%, 기타 40%)). 3.3.4에 따라 합성가죽에 해당하는 경우 '인조가죽(합성가죽)'으로 표시하거나 '합성가죽'으로 표시한다.</p>	<p>죽'으로 표시한다. 또한, 코팅 재료의 성분과 코팅 재료 하단에 사용된 천연가죽의 동물명을 병기할 수 있다.[예 : 코팅가죽(폴리우레탄 코팅, 소가죽)]. 코팅 재료의 성분과 코팅 재료 하단에 사용된 천연가죽의 동물명 전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 때 천연가죽 동물명만 병기해서는 안된다.</p> <p>7.2.4 3.1.5에 따라 라미네이팅 가죽에 해당하는 경우 '라미네이팅 가죽'으로 표시한다. 또한, 라미네이팅 재료의 성분과 라미네이팅 재료 하단에 사용된 천연가죽의 동물명을 병기할 수 있다.[예 : 라미네이팅 가죽(폴리우레탄 라미네이팅, 소가죽)]. 라미네이팅 재료의 성분과 라미네이팅 재료 하단에 사용된 천연가죽의 동물명 전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 때 천연가죽 동물명만 병기해서는 안된다.</p> <p>7.2.5 3.1.6에 따라 재조합 가죽에 해당하는 경우 '재조합가죽'으로 표시한다. 또한, 재조합 방식을 부기(예 : 재조합가죽(본딩가죽), 재조합가죽(그라인딩가죽), 재조합가죽(분쇄가죽))하거나 가죽성분과 가죽 이외 성분의 혼용률을 조성이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예 : 재조합가죽(가죽 60%, 기타 40%)]</p> <p>7.2.6 3.1.7에 따라 합성가죽에 해당하는 경우 '인조가죽' 또는 '합성가죽'으로 표시한다.</p>	<p>가죽 종류별 표시방법 구분 천연가죽을 기반으로 하는 코팅가죽을 인조가죽으로 간주하고, 동물명을 표기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함(업계 의견반영)</p>
<p>7.1.4 천연모피는 '천연모피'로 표시하고 동물명을 부기한다(예 : 천연모피(밍크), 천연모피(토끼), 천연모피(여우), 천연모피(너구리) 등).</p>	<p>7.2.7 천연모피는 '천연모피(동물명)'로 표시하고, 동물명은 동물종의 통칭을 나타내는 용어를 부기한다.[예 : 천연모피(밍크), 천연모피(토끼), 천연모피(여우), 천연모피(너구리) 등].</p>	
<p>7.1.5 가죽 및 모피의류의 안감이 섬유재질일 경우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른다.</p>	<p><삭 제></p>	<p>7.2.1에 포함</p>
<p><신 설></p>	<p>7.3 제조국명 제조국은 제조자가 속한 국가를 말하며, 여러 제조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을 부여한 자가 속한 국가명을 쓰고, 국내에서 제조된 경우에는 한국산 등으로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기한다. 수입제품인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기한다.</p>	<p>제조국명 신설</p>
<p>7.2 치수 표시</p> <p>7.2.1 치수 표시는 의류, 신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p> <p>7.2.2 가죽 및 모피의류의 경우는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가정용 섬유제품) [별표]에 따르며, 신체 치수를 표시한다.</p> <p>7.2.3 신발치수는 KS M 6681 또는 KS M ISO 9407에 따라 표시하고 기타 신체치수인 발길이(mm)를 표시한다.</p> <p>7.2.4 치수표시는 제품내의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p> <p>7.3 단위 성분·성능·규격 등의 표시에 있어서의 단위는 국제 표준 단위(SI)로 표시하여야 한다.</p>	<p>7.4 치수</p> <p>7.4.1 치수 표시는 의류, 신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p> <p>7.4.2 가죽 및 모피의류의 경우는 안전·품질표시 부속서 1 가정용 섬유제품 [표 14]에 따르며, 신체 치수를 표시한다.</p> <p>7.4.3 신발치수는 KS M 6681 또는 KS M ISO 9407에 따라 표시하고 기타 신체치수인 발길이(mm)를 표시한다.</p> <p>7.4.4 치수표시는 제품내의 잘 보이는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단위는 국제 표준 단위(SI)로 표시하여야 한다.</p>	

7.4 사용상 주의사항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별표 2]**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품 특성에 따라 취급상 주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2]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방법

1. 가죽 및 모피의류 가죽 및 모피의류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가죽 및 모피의류의 취급상 주의사항은 별도 꼬리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취급상 주의사항
세탁(벤젠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물로 씻을 때에 가죽 및 모피의 색이 바래지거나 또는 가죽이 경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
겉쳐두지 않고 온도·습도가 낮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장마철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가죽 및 모피의 때를 빼는 경우에는 가죽 및 모피의류 전문용 클리너를 사용하고 특히 스웨이드 가죽은 고무지우개로 때를 뺀 후 솔로 털 것
다림질은 저온에서 두꺼운 종이 또는 헝겊을 대고 해야 하며 증기 다리미는 사용하지 말 것

2. 가방 및 핸드백 가방 및 핸드백은 손질방법 및 보존방법인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2.1 천연가죽의 경우

취급상 주의사항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아니할 것
마른 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 것
보존 시에는 온도나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할 것

2.2 인조가죽의 경우

취급상 주의사항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3. 신발 다음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한다.

3.1 천연가죽의 경우

취급상 주의사항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아니할 것
솔로 잘 닦을 것

7.5 취급상 주의사항

7.5.1 취급상 주의사항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표 4]**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품 특성에 따라 취급상 주의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 **가죽 및 모피의류의 취급상 주의사항은 별도 꼬리표를 사용할 수 있다**

[표 4]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

(1) 가죽 및 모피의류

세탁(벤젠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물로 씻을 때에 가죽 및 모피의 색이 바래지거나 또는 가죽이 경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
겉쳐두지 않고 온도·습도가 낮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존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장마철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가죽 및 모피의 때를 빼는 경우에는 가죽 및 모피의류 전문용 클리너를 사용하고 특히 스웨이드 가죽은 고무지우개로 때를 뺀 후 솔로 털 것
다림질은 저온에서 두꺼운 종이 또는 헝겊을 대고 해야 하며 증기 다리미는 사용하지 말 것

(2) 가방 및 핸드백

천연 가죽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아니할 것
	마른 수건이나 기타 부드러운 천으로 닦을 것
	보존 시에는 온도나 습도가 높은 곳을 피할 것
인조 가죽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3) 신발

천연 가죽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젖었을 때에는 직사일광 또는 불로 건조시키지 아니할 것
	솔로 잘 닦을 것
	보존 시에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할 것
인조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p>보존 시에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할 것</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703 76 805 253" rowspan="3">가죽</td> <td data-bbox="805 76 1329 120">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td> </tr> <tr> <td data-bbox="805 120 1329 165">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td> </tr> <tr> <td data-bbox="805 165 1329 253">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td> </tr> </table>	가죽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가죽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p>3.2 인조가죽의 경우</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81 143 703 188">취급상 주의사항</td> </tr> <tr> <td data-bbox="81 188 703 232">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td> </tr> <tr> <td data-bbox="81 232 703 277">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td> </tr> <tr> <td data-bbox="81 277 703 322">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td> </tr> <tr> <td data-bbox="81 322 703 367">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td> </tr> </table>	취급상 주의사항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취급상 주의사항							
건조시킬 때에는 응달에서 말릴 것							
기름기가 있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가능한 한 피할 것							
불 옆에 놓으면 변화하거나 변형될 수 있다.							
표면의 때를 빼기 위하여 비눗물에 적신 천을 사용하고, 구두약 등의 보혁유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p>4. 기타 가죽제품 기타 가죽제품은 제품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다.</p>	<p><삭 제></p> <p>7.5.2 유아 또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6 완구 제2부 5.2 작은 부품시험에서 통과되는 작은 부품이 부착된 경우에는 [표 5](1)에 따라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p> <p>7.5.3 어린이의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 어린이용 가죽제품 중 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 합이 0.1 %를 초과한 제품은 [표 5](2)에 따라 경고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표 5] 기타 취급상 주의 ■경고 문구</p> <p>(1) 유아 또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부착된 작은부품에 대한 주의사항</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취급상 주의사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td> </tr> </table> <p>(2) 어린이의 입에 넣어 사용할 용도로 제작된 것이 아닌 어린이용 가죽제품 중 DEHP, DBP, BBP, DINP, DIDP, DNOP의 총 합이 0.1 %를 초과한 제품에 대한 경고사항</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경고사항</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td> </tr> </table> <p>7.6 안전요건 적합 표시</p> <p>안전요건에 적합함을 수요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표시사항에 “기준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한 제품임”의 표시문구를 추가할 수 있다.</p>	취급상 주의사항	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	경고사항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p>유아 또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의 표시는 가죽제품을 따르도록 되어 있어 표시사항 내용은 모두 가죽제품 표시 방법으로 이동</p>	
취급상 주의사항							
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음”							
경고사항							
경고! 입에 넣으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